연구총서 14-AB-08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utilization of 『White paper on crime』 in Korea

김지선 | 박미숙 | 홍영오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 간 사

『범죄백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통계로부터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들에서 생산한 범죄자의 처리 및 처우에 관한 각종 통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평가함으로써 범죄현상 및 형사사법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범죄백서』는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형사정책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백서』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형사정책의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2014년 『범죄백서』의 개편하기 위해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공동편집위원회의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전반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이해 및 형사사법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범죄백서』 발간의 목적을 만족시키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범죄백서』의 구성 체계 및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 통계자료 형식과 내용, 이용자의 편의성, 자료수집 및 분석, 발간과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태와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분석 및 활용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여 2014년 『범죄백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범죄백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 나아가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이 협력하여 『범죄

백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및 교정·보호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공식범죄통계의 생산, 수집, 집계 과정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김지선 선임연구위원과 홍영오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곽상욱

목 차

국문요약 ·····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4
1. 연구내용 ····· 24
2. 연구방법 ····· 25

제2장 『범죄백서』의 체계 및 내용 분석 ····· 27
제1절 현행 편집체계 ····· 29
1. 2013년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 29
2. 지난 10년간 편집 체계의 변화 ····· 33
제2절 최근 범죄 및 형사정책 동향과 현행 편집체계의 적정성 ····· 35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및 관련정책의 증가 ····· 35
2. 증거기반 형사정책지향과 형사사법기관 활동성과에 대한 관심 증가 ····· 39
3.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활동의 증대 ····· 43
4.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범죄자의 증가 ····· 44
제3절 각 편별 영역 구성 및 내용의 적정성 ····· 46
1. 범죄의 동향편 ····· 46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 46
나. 내용의 적정성 ····· 49
2. 범죄의 처리편 ····· 51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 51
나. 내용의 적정성 ····· 52
3. 범죄자의 처우편 ····· 52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 52
나. 내용의 적정성 ····· 54

제3장 통계자료의 적절성 및 이용자 편의성 ····· 57
제1절 통계자료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 ····· 59
1. 용어의 적절성 ····· 59
2. '범죄율'의 제시 ····· 60
3. 단위, 주석, 출처표시 일관성과 정확성 ····· 62
4. 표와 도표 제목 위치의 적절성 ····· 63
5.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 63
제2절 이용자 편의성 ····· 65
1.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 여부 및 포괄성 ····· 65
2. 주요 사용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 여부 ····· 68

제4장 자료의 수집, 편집 및 분석과 발간과정 ····· 71
제1절 자료수집 과정 ····· 73
1. 자료원(data source)과 자료의 질 ····· 73
2. 자료수집 방법 ····· 74
제2절 자료의 편집·분석 및 발간과정 ····· 79
1. 자료의 편집과 분석과정 ····· 79
2. 집필 및 발간과정 ····· 80

제5장 주요 국가의 범죄백서 사례 ····· 83
제1절 일본의 범죄백서 ····· 85
1. 일본『범죄백서』개관 ····· 85
2. 平成26년(2014년)판『범죄백서』의 편집체계 ····· 87
제2절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 ····· 96
1.『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Australian crime: facts and figures)』 개관 ····· 96
2. 2013년『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의 편집체계 ····· 97
제3절 독일에서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in Germany) ····· 102
1.『독일에서의 형사사법』개관 ····· 102
2. 2009년『독일에서의 형사사법』의 편집체계 ····· 102
제4절 소결 ····· 104

제6장 개선방안 ····· 107
제1절 편집체계 및 내용구성 개편안 ····· 110
1. 편집체계의 개편 ····· 110
가. 범죄피해자 편 신설 ····· 110
나. 소년범죄의 동향 및 소년 범죄자 처우 편의 신설 ····· 110
다. 재범 장의 신설 ····· 111
라. 범죄자처우에서 민간의 참여 장의 신설 ····· 111
마.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 112
바.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 112
2. 하위영역의 연계성 강화 ····· 117
3. 추가 및 삭제 항목 ····· 117
가. 추가 항목 ····· 117
나. 삭제 항목 ····· 118
제2절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 119
1. 통계자료 내용 및 표시의 수정 ····· 119
2. 통계표 형식의 통일 ····· 119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 120
가. 일러두기 내용보강/용어해설집 제작 ····· 120
나. 자료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 ····· 120
제3절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의 개선 ····· 121
1.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통한 원자료의 수집 ····· 121
2.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자료편집 및 분석의 전문화 ····· 121
3. 자료분석 및 발간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 122

참고문헌 ····· 125

Abstract ····· 127

표 차례

〈표 2-1〉『범죄백서』(2013)의 체계와 구성 ····· 31
〈표 2-2〉『범죄백서』의 특집편 주제 목록(2003년~2013년) ····· 33
〈표 2-3〉 재복역 기간별 현황(2004년~2008년) ····· 41
〈표 2-4〉 출원기준 재입원자 현황 ····· 41
〈표 2-5〉 외국과의 비교(2010년, 2011년) ····· 51
〈표 4-1〉『범죄백서』의 자료원(data source) ····· 74
〈표 4-2〉 대검찰청의 죄명 분류표 ····· 76
〈표 4-3〉 보호관찰의 죄명 분류표 ····· 76
〈표 4-4〉 교정의 죄명분류 ····· 77
〈표 5-1〉 일본『범죄백서』의 체계와 구성 ····· 87
〈표 5-2〉 연도별 특집주제 목록(2004~2014년) ····· 96
〈표 5-3〉『호주 범죄: 실태』체계와 구성 ····· 98
〈표 5-4〉『독일에서의 형사사법』체계와 구성 ····· 103
〈표 6-1〉 2014년『범죄백서』 편집체계 개편안 ····· 113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범죄 및 범죄자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발간되는 『범죄백서』는 각 형사사법 담당기구의 고유 업무에 한정된 다른 범죄 관련 정부간행물(『범죄통계』, 『범죄분석』, 『검찰연감』, 『사법연감』 등)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의 발생 및 처리뿐만 아니라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들에서 생산한 범죄자의 처리 및 처우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범죄의 발생 및 형사사법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 법무연수원에서 1984년부터 발간해 온 『범죄백서』는 중요성과 활용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한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범죄백서』는 형사정책의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별 형사사법기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투입이 가능한 가공된 통계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며, 자료수집 및 집계방법, 통계항목 및 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의 미비로 인해 통계가 잘못 활용될 위험성 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2014년 『범죄백서』를 개편하기 위해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합의하였다.

○ 본 연구는 2014년 『범죄백서』를 개편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범죄백서』의 구성 체계 및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 통계자료 형식과 내용, 이용자의 편의성, 자료수집 및 분석, 발간과정 등의 측면에서 실태와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분석 및 활용과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2014년 『범죄백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2013년에 발간된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현행 구성체계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10여 년간 『범죄백서』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3년에서 2012년에 발간된 『범죄백서』도 살펴보았다.

○ 『범죄백서』에 새롭게 추가될 통계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범죄분석』(대검찰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법무부),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검찰연감』(대검찰청), 『사법연감』(대법원),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에 수록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정책현황과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2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본계획에 따른 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였다.

○ 일본, 독일, 호주에서 발간되는 범죄백서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2. 현행 『범죄백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범죄백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분석, 최근의 범죄 및 형사정책 동향, 일본, 독일, 호주에서 발간되는 『범죄백서』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즉, 편집체계 및 내용구성과 관련된 개편안,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편안 및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의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가. 편집체계 및 내용구성 개편안

○ 편집체계의 개편

- "범죄피해자" 편의 신설 : 범죄피해자편의 신설은 최근 형사정책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범죄피해조사가 2009년부터 실시됨으로써 공식적인 범죄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편에서는 기존에 여러 편에서 분산되어서 다루어진 범죄피해의 실태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통합하고, 범죄피해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피해율, 신고율, 신고되지 않은 이유, 범죄피해실태, 범죄피해취약성요인 등을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소년범죄의 동향 및 소년범죄자 처우" 편의 신설 : 현행『범죄백서』에서는 소년범죄자의 발생과 처우에 관한 부분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소년에 대한 항목분류 없이 성인과 소년을 비교하는 표로 제시되어 있어 한 해에 소년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하고, 발생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 처우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있다. 소년범죄의 동향 및 처우 편을 신설함으로써 성인과는 상이한 처리절차 및 처우형태를 갖는 소년범죄의 동향과 처우를 한 곳에 제시하였으며, 소년범죄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다소 미약하게 제시되었던 보호관찰의 여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되도록 구성하였다.
- "재범" 장의 신설 :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의 생산목적이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형사사법활동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를 수집하여 가공하여 발간된 범죄백서도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법기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재범률에 관련된 내용이 범죄백서에 대폭 추가될 필요가 있다. 현재『범죄백서』에서는 보호관찰대

상자 재범률 현황이라는 하나의 통계자료이외에는 재범에 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편 범죄자의 처우 편에 재범에 관련된 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5장 재범의 장에서는 먼저 경력범죄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형사사법자원들의 양과 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후향적인 방식의 재범통계인 입건된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 보호관찰대상자 중 보호관찰경력자 비율, 교도소 입소 인원 중 재입소자의 비율, 소년원 입소 인원 중 재입원자의 비율 등을 다루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이나 교정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전향적 방식의 재범통계인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율, 재입원율, 재복역률 등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 범죄자처우에서 "민간의 참여" 장의 신설 : 형사정책의 중심이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 사후적 범죄대응에서 사전적 범죄예방으로 변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참여적 사법(participatory justice)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 및 지역사회의 활동영역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활동의 영역이 1990년대에는 주로 보호관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및 교정영역(교정위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지원, 재판참여(국민참여재판) 등의 분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장 민간의 참여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범죄자처우와 관련된 모든 민간부문의 활동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범죄 동향편과 범죄의 처리편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체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에 포함되는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주요 폭력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범죄율, 검거건수, 검거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있으며, 제2편의 범죄의 처리부분에서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 범죄의 발생동향에서 범죄의 양과 심각성뿐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의 유형은 무엇이며, 그들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또한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기존의 범죄백서에서는 특정 범죄자를 소년범죄자, 여성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외국인범죄자로 구분하고, 각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유형, 범죄행위의 특성, 검찰에서의 처리현황, 교정시설에서 처우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과연 노인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노인범죄자가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엇인가,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교정처우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범죄백서』개편안에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 하위영역의 연계성 강화

- 현행『범죄백서』편, 장, 절의 제목과 하위영역에 포함된 내용 간에 연계성이 낮은 부분들이 있다. 상위영역과 이에 포함되는 하위영역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범죄자유형별 범죄동향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형사법공조에 대한 내용은 제4장 국민의 국외범죄와 피해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하고, ② 검찰의 범죄 처리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전력별 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3편 범죄자의 처우에 신설된 제5장 재범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2장 보호관찰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석방·가출소·가종료자에 대한 내용은 제1장 교정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하고, ④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2장 보호관찰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1장 교정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하며, ⑤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3장 소년보호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관한 내용은 제3절 청소년비행센터로 구성한다.

○ 추가 및 삭제 항목

- 추가항목 : 보호관찰 업무영역별 현황 내용, 소년보호담당직원 관련 통계 및 교정처우부분에서 처우현황과 더불어 처우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삭제항목 : 범죄자 처우(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현황, 연혁 등에 대한 내용, 교정처우분야에서 경비처우급별 판정기준이나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과 같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 중복된 통계표 및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통계자료 내용 및 표시의 수정

- 『범죄백서』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에서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을 진단한 결과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용어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범죄발생건수는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건수를 집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신고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 발생건수는 '인지건수'로, 인구비는 '범죄율'로, 강간(성폭력)은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로 표현, 범죄율은 연도별, 범죄유형별 비교나 외국의 범죄발생추세와의 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지표이므로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표에서는 반드시 범죄율 제시, 『범죄백서』의 일러두기와 통계표 주에서 형법범죄에 대한 정의 수정, 통계표에서 단위가 누락된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단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단위가 잘못 표기된 통계표를 수정, 표의 번호와 제목은 표 위의 왼쪽 끝으로 정렬하고,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의 가운데로 정렬하는 것으로 수정, 외국과의 범죄발생현황 비교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전체범죄가 아닌 형법범죄발생건수와 범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야한다.

○ 통계표 형식의 통일

-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연도별 추세표에서 기간설정의 통일성 문제, 범죄율 제시의 비일관성 문제, 구성비 제시의

통일성의 문제, 추세자료에서 증감율 계산방법 통일성 문제 등이다.

-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표에서 전체 범죄발생추세(30년)를 제외한 모든 통계표는 기간설정을 10년으로 통일하며, 추세자료에서 증감율 계산은 기준년도의 수치를 100으로 한 기준년도대비 증감율로 통일하고, 2×2 표 형식을 갖는 통계표에서 구성비를 일관성있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편의성 제고 :

- 『범죄백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과 소개가 자세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
- 개선안으로 ① 일러두기에 각 범죄유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죄명에 대한 설명, ②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용어(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본안사건, 재기수사명령사건, 선도위탁 등)에 대한 설명, ③ 보호관찰 재범률, 전과, 재범 등과 같은 재범관련 용어에 대해 재범률 산정방식, ④ 전향적 재범통계인 경우 재범산정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추적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을 보강하거나 용어해설집을 부록으로 별도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범죄백서』에서 사용한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 『범죄백서』를 접한 이용자들이 『범죄백서』에서 사용된 원자료들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나 별도의 자료를 구하고자 할 때 쉽게 자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범위, 적용기준, 작성항목, 작성주기, 자료수집방법 및 체계 등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 관련

○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통한 원자료의 수집 :

- 현재 『범죄백서』에 활용될 자료의 수집은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의 『범죄백서』 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담당자가 각 기관에서 전년도의 공식범죄통계자료집을 발간하면, 해당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대검찰청 『범

죄분석』, 법무부 범죄예방정책『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교정통계연보』등의 통계자료집은 각 기관의 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입력된 자료를 추출하여 발간한 것이다.『범죄분석』은 범죄통계입력시스템의 입력자료,『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는 보호관찰소의 보호통합정보시스템(IPIS)과 소년보호기관의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에서 수집되는 자료, 마지막으로『교정통계연보』는 보라미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주무부서인 법무연수원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여러 기관(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범죄백서』에서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계항목을 설정해 놓고, 관련 항목들이 자동으로 "범죄백서분석통계시스템(가칭)"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자료편집 및 분석의 전문화 :

- 현재『범죄백서』의 자료편집과 분석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에 소속된 한명의『범죄백서』 담당자(계장)가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범죄학이나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되어 일정기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이며,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개편안으로는 자료수집, 편집, 그리고 분석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연수원내에 범죄백서 발간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재와 같이 법무연수원에서 파견받은 일선 수사관이 아닌 통계전문인력이 범죄백서 발간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자료분석 및 발간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

- 현재『범죄백서』 편집위원회는 검찰,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등 각 기관에서 법무연수원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특집편을 제외하고는『범죄백서』의 편집체계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집필을 분담하고, 전체 발간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집필은 범죄의 발생과 처리는 검찰 소속 사무관, 교정은 교정사무관,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사무관, 소년보호는 보호직 사무관이 담당하고, 매해 주제가 바뀌는 특집편은 연구위

원(검사)들이 담당한다.

- 개선안으로는 필요한 통계항목의 설정, 적용될 개념과 정의의 개발, 자료수집 및 편집, 분석의 계획과 수행, 결과물을 준비하는 등의 과정에 범죄, 피해자, 형사정책 등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범죄백서』를 출간·배포 전에 외부전문가에게 검수를 의뢰하여 편집체계의 적절성과 기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범죄 및 범죄자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무연수원에서는 1984년부터 범죄의 발생, 범죄사건의 처리 및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범죄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1].

우리나라에는 『범죄백서』 이외에도 경찰의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 검찰의 『검찰연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 등과 같이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의 간행물들이 있다. 경찰의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당해 연도의 수사기관에서 처리한 범죄발생과 처리현황에 관한 통계표를 제시해주는 통계연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검찰의 『검찰연감』은 한 해 동안 검찰의 운영현황을 기술하고 이와 더불어 범죄자 처리에 관련된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1) 2013년 『범죄백서』의 발간사를 통해서 『범죄백서』의 발간목적을 유추해보면, "형사사법 관련기관에서 범죄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경찰의 『범죄통계』는 전국의 각급 경찰관서에서 전산입력한 형사사건의 통계원표를(발생, 검거, 피의자통계원표) 경찰청 수사국에서 분석한 것이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경찰에서 수집한 자료이외에 검찰이 인지한 사건과 특별사법경찰기관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범죄통계를 다시 모아서 종합 정리한 자료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종합하여 발간하고 있다(탁종연, 2008).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또한 『검찰연감』과 유사하게 한 해 동안의 법원의 운영현황을 기술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법원의 범죄자처리에 관련된 통계표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는 보호관찰대상자(협의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존스쿨,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대상자 포함)의 집행현황과 보호소년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정통계연보』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들의 수용현황 및 처우실태를 보여준다.

『범죄백서』는 이와 같은 범죄관련 정부의 간행물과 몇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이러한 범죄관련 발간물이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소년보호, 교정기관 등 각 형사사법 담당기구의 고유 업무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범죄백서』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의 발생 및 처리뿐만 아니라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들에서 생산한 범죄자의 처리 및 처우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범죄의 발생 및 형사사법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대부분의 범죄관련 간행물들이 해당연도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범죄백서』에서는 범죄의 발생 및 검거와 범죄자의 처리·처우에 관한 10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주요 항목별로 동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셋째, 다른 범죄관련 정부의 간행물들이 관련 분야에서 수집한 통계를 통계표의 형태로 단순히 나열하여 제시하는 반면에, 『범죄백서』는 통계자료를 2차적으로 가공하거나 통계자료에 대한 기술과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백서』의 장점으로 인하여 『범죄백서』는 형사정책분야의 실무가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백서』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범죄백서』의 가장 기본적인 한계점은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한 원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타당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등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생산되는 범죄통계의 생산, 수집, 관리 및 활용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탁종연, 2008; 홍영오 외, 2012; 김은경, 2008; 김은경 외, 2010; 윤옥경 외, 2010a; 윤옥경 외, 2010; 이민식·황의갑, 2010).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점 이외에도 현재의 『범죄백서』는 형사정책의 수립과 모

니터링,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범죄의 발생, 검찰과 법원의 범죄 처리현황, 교정·보호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해 개별 형사사법기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투입이 가능한 가공된 통계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며, 자료수집 및 집계방법, 통계항목 및 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의 미비로 인해 통계가 잘못 활용될 위험성 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범죄백서』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분야별 공식범죄통계의 생산, 수집, 집계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3]과 더불어 각 분야별 범죄통계 작성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중앙통계기관의 설립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같이 1960년대 이래로 지속되어 온 범죄통계의 생산, 수집, 집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작업이므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공식 범죄통계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작업을 진행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형사정책 및 범죄학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재 『범죄백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단기간에 『범죄백서』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법무연수원과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범죄통계동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2014년 『범죄백서』를 개편을 위해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범죄백서』를 개편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범죄백서』의 구성 체계 및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 통계자료 형식과 내용, 이용자의 편의성, 자료수집 및 분석, 발간과정 등의 측면에서 실태와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분석 및 활용과정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2014년 『범죄백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

3) 경찰에서 생산한 범죄통계의 문제점은 탁종연(2008)과 홍영오 외(2012)의 연구결과를,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의 문제점은 김은경 외(2010)의 연구결과를, 보호관찰분야 범죄통계의 문제점은 윤옥경 외(2010a)의 연구결과를 교정분야 범죄통계의 문제점은 윤옥경 외(2010b)의 연구결과를, 소년보호분야 범죄통계의 문제점은 이민식 외(2010)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것.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현행 『범죄백서』의 체계 및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현행 『범죄백서』의 체계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현행 『범죄백서』의 체계와 내용 구성의 적정성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범죄백서』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범죄백서』의 체계와 내용구성의 적정성부분에서는 먼저 현행 『범죄백서』가 최근의 범죄현상의 변화 및 형사정책적 이슈와 동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범죄백서』는 매년 발간되는 정기간행물로 편집체계와 다루는 영역 및 항목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범죄현상에서의 중요한 변화와 형사정책에서의 관점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백서』의 가장 큰 틀인 범죄의 동향, 범죄의 처리, 범죄자의 처리편을 기준으로 하여 각 편과 각 편의 하위영역들이 체계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 하위영역들이 적절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UN 경제 및 사회문제 담당부 통계분과에서 작성한 형사사법통계에 대한 매뉴얼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현행 『범죄백서』가 형사사법 분야의 중요 통계항목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부분에서는 『범죄백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계자료의 형식 및 내용이 적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주요 사용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data)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둘째, 『범죄백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 형사사법기관의 자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자료가 편집·분석되며, 책자로 발간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일본, 독일, 호주에서 발간되는 범죄백서의 편집체계를 분석하고, 활용과

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범죄백서』의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 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의 고유 업무영역에 따라 별도의 범죄관련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나, 일본, 독일, 호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범죄백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집자료를 토대로 한 범죄발생 및 검거동향, 검찰과 법원의 범죄 처리 현황, 교정보호기관의 처우현황을 하나의 책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본과는 달리 독일과 호주의 발간물에서는 범죄백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범죄 및 형사사법 활동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범죄백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외국의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및 활용과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범죄백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2013년에 발간된『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현행 구성체계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10여 년간『범죄백서』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3년에서 2012년에 발간된『범죄백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범죄백서』에 새롭게 추가될 통계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범죄분석』(대검찰청),『범죄예방통계연보』(법무부),『교정통계연보』(법무부),『검찰연감』(대검찰청),『사법연감』(법원행정처),『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에 수록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정책현황과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2차 범죄피해자기본계획에 따른 각 년도별 시행계획과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독일, 호주에서 발간되는 범죄백서의 구성 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한편, 2014년『범죄백서』의 발간을 위해서 법무연수원의 편집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본 연구과제 연구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

하여, 여러 차례의 편집회의를 통해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항목, 통계표제시방법, 일러두기의 내용 등에 대한 주요 개선방향을 결정하였다.

제2장

『범죄백서』의 체계 및 내용 분석

제2장

『범죄백서』의 체계 및 내용 분석

제1절 현행 편집체계

1. 2013년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2013년에 발간된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볼 때, 『범죄백서』는 총4편, 16장, 53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7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체계의 가장 큰 분류항목인 각 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형사사법단계의 흐름에 따라 범죄의 발생, 검찰과 법원에서 범죄의 처리 및 교정보호단계에서 범죄자 처우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범죄의 동향"에서는 지난 30년간 전체범죄 및 지난 10년간의 형법범죄, 특별법범죄, 그리고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요 범죄유형의 범죄행위특성, 범죄자특성, 피해자특성, 주요 범죄자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국민의 국외 범죄와 피해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형법범죄를 크게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흉악)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법범죄는 교통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마약류범죄, 경제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컴퓨터범죄, 선거범죄 등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범죄백서』의 범죄발생과 관련된 부분의 원자료인 『범죄분석』에서는 형법범죄를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별법은 국가적,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유형 57가지를 선별하여 가

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그 이외 나머지의 특별법범죄는 '기타'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요 범죄자유형은 소년 범죄자, 여성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외국인범죄자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에 대해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도 제시하고 있다.

제2편 "범죄의 처리"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범죄(자) 처리현황과 범죄피해자 구제현황을 다루고 있다. 검찰의 범죄처리 현황에서는 제1편의 발생현황과 마찬가지로 2가지 유형의(재산범죄와 강력범죄(흉악)) 형법범죄와 8가지 특별법범죄 유형별로 처리현황과 더불어 5가지 범죄자유형별 처리현황도 분석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 범죄의 발생과 더불어 경찰의 검거, 검찰의 범죄 처리 통계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백서』의 범죄발생과 검찰의 처리현황은 동일한 범죄분류체계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범죄 처리현황의 경우에는 자료출처가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으로 달라져 범죄분류체계가 범죄의 발생과 검찰의 처리현황과 다를 뿐만 아니라[4] 범죄유형별 법원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도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다. 대신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을 공판사건, 소년사건, 약식명령사건, 즉결심판사건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 현황의 경우에는 범죄발생현황과는 달리 지난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처리"편의 마지막 장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구제'라는 제목 하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공판단계에서의 배상명령제도 등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구제제도,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구조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제도, 그리고 형사조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4) 형사사법기관에 따라 범죄유형분류가 달라지는 문제점은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표 2-1〉 『범죄백서』(2013)의 체계와 구성

편	장	절
제1편 범죄의 동향	제1장 범죄의 일반적 동향	제1절 전체범죄
		제2절 형법범
		제3절 특별법범
		제4절 외국과의 비교
	제2장 각종 범죄의 동향	제1절 재산범죄
		제2절 강력범죄(흉악)
		제3절 교통범죄
		제4절 보건범죄
		제5절 환경범죄
		제6절 마약류범죄
		제7절 경제범죄
		제8절 지식재산권범죄
		제9절 컴퓨터범죄
		제10절 선거범죄
	제3장 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	제1절 소년범죄자
		제2절 여성범죄자
		제3절 공무원범죄자
		제4절 정신장애범죄자
		제5절 외국인 범죄자
		제6절 국제형사법공조
	제4장 국민의 국외 범죄와 피해	제1절 국민의 출국과 해외체류 현황
		제2절 국민의 국외 범죄
		제3절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제2편 범죄의 처리	제1장 개관	
	제2장 검찰	제1절 처리인원
		제2절 처리내용
		제3절 각종 범죄의 처리현황
		제4절 범죄자 유형별 처리현황
	제3장 법원	제1절 개설
		제2절 공판사건
		제3절 소년사건
		제4절 약식명령사건
		제5절 즉결심판사건
	제4장 범죄피해자의 구제	제1절 개설
		제2절 형사절차상 구제제도
		제3절 경제적 지원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기타 구조제도
		제5절 형사조정제도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표 2-1〉의 계속

편	장	절
제3편 범죄자 처우	제1장 교정	제1절 교정조직의 개황과 혁신
		제2절 교정시설 수용현황
		제3절 수형자의 처우
		제4절 소년 · 여성 및 외국인수형자의 처우
		제5절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제6절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제2장 보호관찰	제1절 개관
		제2절 보호관찰
		제3절 사회봉사수강명령
		제4절 보호관찰 조사
		제5절 갱생보호
		제6절 가석방 · 가출소 · 가종료
	제3장 소년보호	제1절 소년원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
	제4장 사면	제1절 개설
		제2절 사면내역

제3편 "범죄자의 처우"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인 교정시설에서의 범죄자 처우와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에서의 범죄자 처우를 다루고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범죄자 처우는 전체 수용현황과 함께 수용자를 수형자, 미결수용자, 피감호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수용현황, 수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형명 및 형기, 전과 등), 처우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계표와 이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처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관찰' 부분에서는 협의의 보호관찰(probation), 가석방 · 가출소 ·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parole) 및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이 중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현황과 각종 조사제도의 확대로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보호관찰 조사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영역인 갱생보호의 현황과 가석방 · 가출소 · 가석방현황을 다루고 있다.

제3절에서는 소년 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 수용된 소년의 특성, 그들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등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처우현황과 더불어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의 조직 및 연혁 그리고 처우를 담당한 인원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특집편은 그 전해에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 범죄유형이나 형사정책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특집편이 구성되었다. 가정폭력범죄, 노인범죄, 외국인범죄, 성폭력범죄, 조세범죄, 강력범죄, 지식재산권범죄 등이 특집주제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특정 범죄유형이 아닌 수형자의 직업훈련과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에 관한 주제가 선정되었다.

〈표 2-2〉『범죄백서』의 특집편 주제 목록(2003년~2013년)

연도	특집주제
2003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실태
2004	수형자 직업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2005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지원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협력
2006	-
2007	-
2008	고령화사회의 노인범죄 동향 및 처우
2009	외국인 범죄의 동향과 대책
2010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2011	조세범 처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2	강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2013	지식재산권범죄의 최근 동향 및 대책

* 자료출처: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03년~2013년

2. 지난 10년간 편집 체계의 변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지난 10년간『범죄백서』의 편집체계는 범죄발생, 범죄처리, 범죄자의 처리, 특집 편이라는 큰 틀을 고수하였으며, 각 편의 장, 절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개편이 있었다. 개편은 주로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른 범죄 및 범죄자 동향의 변화와 더불어 각 형사사법분야에서 새롭게 신설된 제도를 반영하기 위

한 것이었다.

먼저 범죄동향의 변화에 따른 개편을 살펴보면, 2006년에 각종 범죄의 동향 부분에 컴퓨터범죄, 선거범죄, 증권범죄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지적재산권범죄의 동향분석이 추가되었으며, 이전에는 보건범죄의 하위범주로 다루어지던 환경범죄가 분리되어 별도의 절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컴퓨터관련 범죄의 증가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의 증가, 전지구적인 문제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6년에는 '한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와 피해'가 제1편 제4장으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내국인들의 해외체류 및 거주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당하는 빈도가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내국인들의 해외체류 증가뿐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가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의 하나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외국인 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3편 범죄자 처우의 제2절 교정 부분에서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 부분이 신설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신설에 따른 개편을 살펴보면,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제2편 범죄의 처리 제3장 법원 부분에 한 절로 포함되어 있었던 '범죄피해자의 구제'가 새로운 장으로 분리되었다. 2009년에는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경향을 반영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제 부분에 '형사조정제도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구제제도'를 다루는 부분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도입과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에 따라 2009년에 제2편 범죄사건의 처리 제2장 검찰 부분에 감호청구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이 신설되었고, 제3장 법원 부분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위에서는 2013년 『범죄백서』의 편, 장, 절의 편집체계를 간략히 소개하고, 지난 10여 년간 편집체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2013년에 발간된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하여 편집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현행 『범죄백서』의 최근 범죄 및 형사정책동향의 반영여부와 하위영역구성의 적정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범죄백서』

의 최근 범죄 및 형사정책동향의 반영여부에서는 최근의 형사정책동향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었다면 그러한 지표의 중요도에 비추어 적절하게 편, 장, 절로 위치되어 있는가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하위영역구성의 적정성부분에서는 편, 장, 절과 그 하위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간의 정합성과 각 제목과 그 내용의 정합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최근 범죄 및 형사정책 동향과 현행 편집체계의 적정성

지난 10년간『범죄백서』의 편집체계의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범죄백서』에는 정보지식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주요 범죄유형별 동향부분에 컴퓨터범죄와 지식재산권범죄가 신설되었고, 새로운 형사정책관련 제도가 도입된 경우 이러한 제도의 실시 현황 등을 반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범죄백서』의 편집체계가 최근 형사정책에서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래에서는 최근의 형사정책적 이슈와 동향을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관련 정책의 증가, 증거기반 형사정책지향과 형사사법기관 활동의 성과에 대한 관심 증가,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활동의 증대, 그리고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범죄의 증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범죄백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다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및 관련정책의 증가

범죄자와 더불어 범죄의 중요한 당사자이지만 형사정책분야에서는 잊혀진 존재였던 범죄의 피해자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 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확대, 각 검찰청에 피해자지원과 신설, 형사사법절차에의 피해자 참여확대(불기소통제제도 정비, 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등), 2차적 피해의 예방대

책마련(참고인 내지 증인 신문과정에서의 보호,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비공개 인정 등), 원상회복제도 개선방안(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확대,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도입)의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 종합대책안을 의결하고, 범죄피해자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김덕재, 2006). 그리고 법원행정처 주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①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등 적극적 지위의 강화, ② 2차적 피해방지, ③ 재정신청의 확대, ④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공익단체의 육성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검찰과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대검찰청 강력부 피해자인권과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등)가 신설되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에 따라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제도가 실시되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물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의 손실복구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실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범죄백서』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련내용은 제1편 범죄의 동향의 제2장 재산범죄의 피해현황과 강력범죄 피해자의 특징, 제4장 국민의 국외범죄와 피해와 제2편 범죄의 처리 중 제4장 범죄피해자의 구제 부분에서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범죄백서』에서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내용이 상위영역과 적절한 연계성을 갖고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특성은 범죄의 발생현황을 보여주는 제1편 범죄의 동향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의 소개와 현황을 다루는 '범죄피해자의 구제'의 장이 검찰과 법원에서 범죄자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의 현황을 보여주는 제2편 범죄의 처리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사항들이 상위영역과의 정합성이 매우 낮은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현행 『범죄백서』가 범죄의 발생에서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범죄자의 처리, 교정보호단계에서 범죄자의 처우 등 범죄자 중심의 형사사법 단계의 흐름에 따라 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면, 범죄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여야

만 상위영역과 하위영역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및 관련정책의 증가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피해현황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피해현황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제1편 범죄의 동향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피해자의 특성은 강력범죄(흉악)에 한하여 피해자의 성,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고, 범죄피해상황에 관한 내용은 재산범죄의 피해상황에 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특성 및 범죄피해의 결과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피해현황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현행 범죄통계원표가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 범죄사건과 범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관련 통계는 발생통계원표에서 피해자의 성, 연령, 외국인여부 및 신분, 피해액수, 신체피해상황과 피의자통계원표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범죄백서』에서 국가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통계이외에 조사통계를 활용한다면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조사통계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범죄피해조사가 있다. 범죄피해조사는 공식범죄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범죄피해의 경찰에의 신고율과 신고하지 않은 이유, 구체적인 범죄피해양상 및 결과, 범죄피해와 관련된 취약성요인, 범죄에 관련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범죄피해조사는『범죄백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른 통계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사건에 대한 공식통계자료와 범죄피해자료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범죄발생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치안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노성훈, 2013:115).

UN 경제 및 사회문제 담당국 통계분과(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03)의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매뉴얼에서는 형사사법통계자료에 피해자의 특성과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에서는 범죄관련 연보나 백서에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에 대한 보고서인 『영국의 범죄(Crime in the England and Wales)』에서 범죄피해조사의 자료와 경찰에서 수집한 공식 범죄통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범죄백서』에서는 범죄피해자편에서 범죄유형별 피해실태와 신고율,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치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등과 같은 범죄피해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2편 범죄의 처리 제4장 범죄피해자의 구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1) 형사절차상 구제제도, 2) 경제적 지원, 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기타 구조제도, 4) 형사조정제도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범죄피해자정책의 기본적인 로드맵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강화', '피해자 사생활 평온 보호' 등을 설정하고, 3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참여보장',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라는 정책과제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범죄피해자정책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범죄백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상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구제'에서는 3가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 범죄피해자의 구제에서는 형사절차상 구제와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형사절차상 구제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공판단계에서의 배상명령제도만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신설된 제도인 법률조력인 제도나 피해자국선변호인 제도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한편, 형사

절차상 구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정책목표인 '형사절차참여보장'에 관련된 내용과 유사하지만,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구제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참여보장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5].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손실복구지원의 한 영역에 포함될 뿐이며, 현재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내용들은 제외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에 해당되는 정책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형사정책에서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제1편 범죄의 동향과 제2편 범죄의 처리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관련 내용을 하나의 편으로 통합하고,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의 실태 및 현황과 관련된 내용(범죄피해율, 신고율,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피해의 결과)을 보강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별로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 제도의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증거기반 형사정책지향과 형사사법기관 활동성과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범죄율의 증가로 범죄의 처리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출이 증가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의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범죄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로부터 안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안전관련 관심사가 일반국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서비스 질과 비용을 측정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이 형사사법정책 분야에서도 중요해지면서, 형사사법기관에게 책임성있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사사법기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능력에 기반 해 자원이 할당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5)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제'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서 재범의 감소 혹은 근절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형사사법기관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의 개발 이전과 본격적인 실행 이후 모든 단계에서 그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얼마나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재범감소율이 비용대비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부과되었다(김지선 외, 2014:6).

한편, UN 경제 및 사회문제 담당국 통계분과(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03)의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매뉴얼에서는 범죄의 발생(심각성, 발생률, 추세, 상황 등), 범죄자의 특성,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형사사법단계별 범죄자 및 사건 수, 피해자 특성, 범죄와 관련있는 변인(경제상황,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더불어 재범률과 비용의 항목이 형사사법통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홍영오·김한균, 2012:7).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범죄백서』에서 재범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범죄백서』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이라는 하나의 통계자료 이외에는 재범에 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범죄백서』에서 범죄자의 처우를 담당하는 각 형사사법기관의 재범률 관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이 교정본부에서는 '재복역률', 범죄예방정책국의 소년과에서는 '재입원률' 등과 같은 재범률 통계를 이미 집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향후 『범죄백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재복역 기간별 현황(2004년~2008년)

(단위: 명)

출소인원 / 조사연도 (출소연도)	출소 인원	재복역 인원					
		계	3월 미만	6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2008(2004)	29,875	6,772 (100%)	895 (13.2%)	879 (13.0%)	1,475 (21.8%)	1,711 (25.3%)	1,812 (26.8%)
2009(2005)	27,489	6,169 (100%)	914 (14.8%)	858 (13.9%)	1,330 (21.6%)	1,800 (29.2%)	1,267 (20.5%)
2010(2006)	24,626	5,553 (100%)	738 (15.9%)	809 (17.4%)	1,291 (27.8%)	1,642 (35.3%)	1,073 (23.1%)
2011(2007)	24,151	5,396 (100%)	691 (12.8%)	811 (15.0%)	1,358 (25.2%)	1,604 (29.7%)	932 (17.3%)
2012(2008)	25,802	5,737 (100%)	764 (13.3%)	881 (15.4%)	1,426 (24.9%)	1,701 (29.6%)	965 (16.8%)

* 자료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2013, 『교정통계연보』

〈표 2-4〉 출원기준 재입원자 현황

구분	출원(명)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재입원(명)	비율(%)	재입원(명)	비율(%)	재입원(명)	비율(%)
2009년	2,573	314	12.2	504	19.6	590	22.9
2010년	2,620	359	13.7	579	22.0	622	23.7
2011년	2,559	358	14.0	497	19.4	-	

* 통계산출 기준 : 이송, 처분변경·취소, 이탈, 사망 등으로 출원처리된 자 제외

*자료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

한편, 재복역률, 보호관찰대상 재범률, 재입원률 통계를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복역률의 경우 출소한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죄명별, 형기별로 재복역율과 더불어 교도소에서 특정한 사회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 출소시 가석방이었는지 아니면 만기출소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범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기관에서의 재입원률 통계도 보호소년의 성별, 연령별, 처분유형별(8호, 9호, 10호처분), 죄명별 재입원률의 추이와 함께 소년원 출원생의 성인교도소 입소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대상 재범률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근거법률과 처분명별 재범률 현황

이외에 대상자의 특성인 성별, 연령별 재범률과 보호관찰 경과시점별 재범률, 원죄명과 재범시의 죄명별 보호관찰재범률, 위치추적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률, 보호관찰의 관리감독수준(집중보호관찰, 주요관리대상자, 일반관리대상자)에 따른 재범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정과 소년보호기관에서처럼 보호관찰의 재범률도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과 더불어 보호관찰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의 재범률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6].

한편, 재범률과는 약간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갖는 후향적 방식(retrospective method)으로 집계된 재범 자료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후향적 방식의 재범 자료는 『범죄분석』의 전과 및 재범통계,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의 보호관찰경력별 실시현황, 소년원 입소 인원 중 재입원자의 비율, 『교정통계연보』의 교도소 입소인원 중 재입소자의 비율 등이 있다.

재범률은 특정 시점에 체포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을 일정기간이 흐른 후 추적조사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해당 형사사법기관과 재접촉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전향적인 방식(prospective method)인데 비해, 전과, 소년원 입소인원 중 재입원자의 비율 등은 특정 시점에 형사사법체계에 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과거 범죄경력정보를 파악하여 이전에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후향적인 방식에 의한 통계자료이다(김지선 외, 2014:14). 전향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재범률은 형사사법기관이나 교정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후향적 방식으로 측정된 전과 등은 경력범죄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형사사법자원들의 양과 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김지선 외, 2014:15) 두 가지 통계치를 모두 『범죄백서』에서 제시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행정 및 정책이나 효과성 파악을 위해서 수용자 1인당 비용, 수용자 처우관련 통계(개별 프로그램 대상자수 등) 등 좀 더 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학과교육이나 검정고시 합격 등도 단순 수치제시 보다는 완수율, 합격률 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윤옥경 외, 2010b).

---

6)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분대상자들의 재범률을 측정할 때 재범의 시작시점을 처분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그램 종료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상반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지선 외(2014)의 제2장을 참조.

3.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활동의 증대

종래에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 재판 나아가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의 모든 분야는 국가의 핵심업무로서 인식되었고, 국가가 이를 독점하였다. 그러나 형사정책의 중심이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 사후적 범죄대응에서 사전적 범죄예방으로 변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참여적 사법(participatory justice)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 및 지역사회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활동의 영역이 90년대에는 주로 보호관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및 교정영역(교정위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예방, 범죄피해자지원, 재판(국민참여재판) 등의 분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범죄백서』에서는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활동에 관한 부분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부분적인 활동영역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범죄백서』에서 민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는 1) 제2편 범죄의 처리 부분에서 검찰의 소년 범죄자의 처리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설명하면서 전국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고, 2) 제2편 범죄의 처리 제3장 법원 제2절 공판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의 처리현황,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현황과 선고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3) 제2편 범죄의 처리 제4장 범죄피해자의 구제 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실적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4)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1장 교정 제3절 수형자의 처우 부분 8. 민간인의 교정활동에서 각 분야별 교정위원의 수와 활동실적 등을 다루고 있으며, 5)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2장 보호관찰 제1절 개관 8. 범죄예방위원의 보호관찰활동 현황 부분에서 전체 범죄예방위원의 보호관찰활동 비율, 대상자지정 비율 등을 다루고 있고, 6) 마지막으로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2장 보호관찰 제5절 갱생보호 5. 범죄예방위원의 갱생보호활동 현황에서 갱생보호에서 범죄예방의 활용실적을 다루고 있다.

현행『범죄백서』에서 형사사법분야에서 민간활동을 다루는 방식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법원에서 활동하는 소년자원보호자, 소년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등이 제외되어 형사사법분야의 민간활동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7].

---

7) 어떠한 영역이 배제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활동의 개념을 민간자원자봉사자 활

둘째,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영역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 · 재정지원 및 이와 관련 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이외에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장학사업, 우범지역 순찰 및 우범소년 선도, 법교육 출장 강연, 의료시혜, 약품지원 등("범죄예방자원 봉사 기본규정" 제3조)의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8]. 그러나 『범죄백서』에서는 검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단계, 갱생보호단계 등 각 단계나 분야별로 민간활동에 대한 자료를 분산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자원봉사자의 전체 활동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비행청소년의 선도, 재판, 보호관찰, 교정, 갱생보호, 피해자지원 각 분야별로 민간활동에 대한 자료가 분산되어 제시되어 있어 형사사법 전 분야에 걸친 민간활동의 분포와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독립된 장이나 절에서 모든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민간활동을 함께 다루거나 적어도 교정보호분야의 민간활동이라도 제3편 범죄자의 처우 부분에서 독립된 장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4.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범죄자의 증가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동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민영교도소, 스마일센터 등)까지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민간의 참여 그 중에서도 민간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 이와 같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업무영역이 다양한 이유는 민간자원봉사자 조직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일·유사 목적의 단체들의 업무를 통폐합하고, 1997년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6년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3가지의 민간자원봉사 단체를 법무부 훈령 제363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위촉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승재현 외, 2014:141)

의 증가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다(장준오 외, 2008:1)[9].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범죄자(61세 이상) 수는 2003년 59,759명에서 2009년 126,50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범죄자 중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도 2.6%에서 5.0%로 증가하였다(강은영 외, 2013:36).

이러한 범죄의 추세를 반영하여『범죄백서』에서는 노인범죄자들의 범죄는 각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주로 어떤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주로 어떠한 특성을 갖는 노인범죄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등과 같은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노인범죄자들 중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들에 대한 교정처우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노인수형자의 증가세를 고려해볼 때 교정비용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가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범죄백서』의 특정범죄자유형별로 범죄의 발생과 범죄자의 처리 및 처우실태를 다루는 부분에서 특정 범죄자는 소년, 여성, 공무원, 정신장애자, 외국인 범죄자에 한정되어 있고, 노인범죄자는 제외되어 있다. 단지 제1편 범죄의 동향 부분에서 각종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을 10세 단위로 구분한 통계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어 단편적으로 60세 이상의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범죄백서』에서는 특정범죄자 유형에 노인범죄자를 추가하여 발생동향과 처리 및 처우동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서 발간하는『범죄통계』는 2012년부터 주요 범죄자유형별 동향 부분에 노인범죄자를 추가하여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노인범죄자는 UN의 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범죄자를 의미한다(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9)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무려 38.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역사상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강은영 외, 2013:25).

제3절 각 편별 영역 구성 및 내용의 적정성

아래에서는 현행 『범죄백서』의 각 편을 기준으로 하여, 각 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들(장, 절 등)의 구성이 적정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위영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불필요한 하위영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범죄의 동향편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1) 범죄발생과 범죄자 특성 자료의 혼재

제1편 "범죄의 동향"에서는 제1장 범죄의 일반적 동향, 제2장 각종범죄의 동향, 제3장 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 등 "동향"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1장에서는 발생 동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발생 동향과 함께 범죄자 특성, 범죄행위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을 모두 다루고 있어 체계가 일관되지 않다. 그리고 제2장과 제3장에서도 범죄유형과 범죄자유형에 따라 발생동향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동향이외에 범죄자특성과 범죄행위의 특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의 동향"편에서는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범죄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은 무엇인가, 어느 지역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범죄, 형법범, 특별법범, 주요 범죄유형별로 발생건수, 범죄율, 검거건수, 범죄율과 하위범죄유형별 구성비 등과 같은 동향과 추세를 먼저 다루고, 동일한 범죄분류체계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구성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범죄유형별 발생건수와 범죄율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별, 도시규모별 범죄율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소년범죄의 발생, 처리 및 처우 내용의 분산

“범죄의 동향”편에서는 특별한 형사정책적인 관심과 고려가 필요한 특정범죄자를 소년, 여성, 외국인, 공무원, 정신장애인 범죄자로 구분하고, 각 범죄자유형별로 발생현황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 교정보호상의 처우현황은 각각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특정범죄자의 발생과 처리, 처우에 관련된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 관심을 갖는 특정범죄자가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처우되는가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소년 범죄자의 경우에 심각해진다. 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인 경우 경찰에서 입건처리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송치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집계한 범죄통계만으로는 소년범죄의 발생현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범죄분석』에서 소년범죄의 발생현황과『사법연감』에서 소년보호사건접수 현황 중 경찰송치사건에 대한 통계치를 합쳤을 때 비로소 소년 범죄자의 규모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범죄백서』의 편집체계를 보면, 경찰에 입건된 범죄소년의 발생현황은 제1편 제3장 제1절 소년 범죄자의 특성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접수 현황은 제2편 제3장 제3절 소년사건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소년 범죄자의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년 범죄자의 처리절차와 처분은 성인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의 입건과 검사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며, 처리절차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검사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 형사처분절차로 다시 보내지기도 하고 반대의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범죄백서』의 편집체계는 성인범죄자의 처리에 맞추어져 구성되어 있어 소년 범죄자의 발생, 처리와 처분에 관한 내용이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다. 제1편 제3장 ‘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의 제1절 소년 범죄자의 특성에서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특성별 발생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2편 제2장 ‘검찰’ 제4절 범죄

자 유형별 처리현황에서 1. 소년 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을, 제3장 '법원' 제3절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건처리현황을, 제3편 제1장 '교정' 제4절 소년여성 및 외국인수형자의 처우 1. 소년 수형자의 처우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장 '보호관찰'에서는 항목별로 성인과 소년을 비교하는 표를 제시하거나 4. 소년보호관찰(죄명별, 보호관찰경력별, 학생과 무직자현황별, 종료사유별 현황),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조사 부분은 소년과 성인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3장 '소년보호' 부분에서 시설내 처우(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를 받는 소년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 범죄자의 발생과 처우에 관한 부분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소년에 대한 항목분류 없이 성인과 소년을 비교하는 표로 제시되어 있어 한 해에 소년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하고, 발생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 처우되는지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년 범죄자의 동향과 처우"라는 부분을 독립된 편이나 장으로 구성하여 소년 범죄자의 발생, 처리, 처우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위치

현행 『범죄백서』의 제3장 '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 부분의 마지막 절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적인 규모로 행해지는 범죄의 증가 및 범죄인의 해외로의 도피 증가 등으로 범죄의 국제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현황을 『범죄백서』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을 범죄자유형별 범죄동향을 다루는 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에서 외국인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음 절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보다는 제4장 국민의 국외 범죄와 피해 부분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현황을 소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내용의 적정성

1) 폭력범죄의 동향 누락

제1편에서 범죄의 동향을 제시할 때, 먼저 지난 30년간의 전체범죄의 발생동향을 분석하고, 전체범죄를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하여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주요 범죄유형별 동향에서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몇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범죄의 발생동향과 범죄자특성, 범죄특성, 피해자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형법범의 경우에는 2가지 범죄유형, 특별법범의 경우에는 8가지 범죄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범의 경우에는 교통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마약류범죄, 경제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컴퓨터범죄, 선거범죄 등 주요 특별법 유형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형법범죄의 경우,『범죄백서』의 범죄발생 부분의 원자료인『범죄분석』에서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구분하고 있지만,『범죄백서』에서는 이 중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흉악)에 대해서만 발생동향을 제시하고 있다.『범죄백서』에서 반드시 모든 형법범죄 유형의 발생동향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폭력범죄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유인, 체포·감금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2013년의 경우 전체범죄에서 교통범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형법범죄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폭력범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범죄백서』에 폭력범죄의 발생동향을 포함시켜 전체폭력범죄뿐만 아니라 폭력범죄에 포함되는 폭행,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주요 폭력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범죄율, 검거건수, 검거율 등에 정보를 제공할 있으며, 제2편의 범죄의 처리부분에서도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외국과의 범죄율 비교기준

“범죄의 발생”편 제1장 4절에서는 외국의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범죄발생현황을 비교하고 있다. 외국의 범죄발생현황은 우리나라의 범죄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외국과의 비교·분석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법체계가 다르고, 각 범죄에 대한 정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범죄현황을 외국과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013년『범죄백서』에서 외국과의 비교결과에 따르면(<표 2-5> 참조),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독일보다는 낮지만 미국과 일본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 아래의 주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범죄율을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집계된 범죄율을 비교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결과해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밑에 제시된 주2에 따르면, 미국은 범죄율을 집계할 때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만을 포함하고 있고, 독일은 교통범죄를 제외한 중죄와 경죄, 일본은 교통관계의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일반 형법범을 포함하고 있다. 법규정이 달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형범범죄에 해당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건수는 전체범죄 즉 형법범이외에도 특별법범을 포함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범죄에서 특별법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범죄발생건수 집계방식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형법범죄 발생건수와 그 범죄율을 외국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표 2-5〉 외국과의 비교(2010년, 2011년)

(단위: 건)

구분 \ 국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범 죄 발생건수	2010	10,329,135	5,933,278	1,586,189	1,917,330
	2011	10,266,737	5,990,679	1,481,098	1,902,720
	증감률(%)	-0.6	1.0	-6.6	-0.8
인 구	2010	308,745,538	81,802,300	128,057,000	50,515,666
	2011	311,591,917	81,751,602	127,799,000	50,734,284
	증감률(%)	0.9	-0.1	-0.2	0.4
인 구 10만명당 발생건수	2010	3,346	7,253	1,239	3,795.5
	2011	3,295	7,328	1,159	3,750.4
	증감률(%)	-1.5	1.0	-6.5	-1.2

주: 1. 범죄통계자료 근거
한국 : 대검찰청 범죄분석
미국 : Crime in the United States
독일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일본 : 일본 경찰통계

2. 미국은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를 포함한 숫자이고, 독일은 교통범죄를 제외한 중죄와 경죄, 일본은 교통관계의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일반 형법범, 한국은 전체범죄의 숫자임

3. 2012. 12. 31. 기준 작성 · 보고된 외국 범죄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함

* 자료출처: 『범죄백서』, 2013, p. 51.

2. 범죄의 처리편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제2편 "범죄의 처리" 부분에서는 검찰과 법원에서의 범죄처리현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제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의 처리편의 제4장은 범죄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의 처리부분에 범죄피해자의 구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처럼 범죄의 동향, 범죄의 처리, 범죄자의 처우의 3편 체계를 고수한다면, "범죄의 처리"편보다는 "범죄의 발생"편에 범죄피해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는 형사정책에서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범죄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율, 범죄피해자의 특성, 범죄피해의 결

과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하나의 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 내용의 적정성

제2장 '검찰의 처리' 제1절 개설 부분에서는 연도별 검찰의 사건처리현황과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인원을 다루면서 이와 함께 범죄전력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절의 제목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전력별 현황은 제1편의 범죄의 동향부분에서 범죄자의 특성을 다룰 때 제시하거나 재범에 관련된 편이나 장을 신설한 후 그 안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3. 범죄자의 처우편

가. 구성체계의 적정성

1) 수용 현황과 처우 통계의 혼재

제4절의 소년 · 여성 및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 제5절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제6절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에서는 '처우'라는 제목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특정 수용자에 대한 수용인원, 연령, 범수, 형명, 형기 등에 수용현황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과 여성의 경우에는 죄명별 인원이나 형명, 형기별 인원, 출소사유 이외에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의 처우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국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처우에 관한 통계 없이 수용현황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소년, 여성과 함께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기결과 미결을 함께 다루고 있어 외국인 수형자가 아니라 외국인 수용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여성, 외국인, 미결수용자별로 수용자의 현황을 다루는 자료는 제2절 교정시설의 수용현황에서 함께 다루고, 여성 및 외국인과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는 제3절

수형자의 처우부분에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는 제목에 부합하게 외국인 수형자에 관한 통계와 분석만을 제공하고,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부분에서 전체 미결자 중 외국인 미결자의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가석방·가출소·가종료자

가석방·가출소·가종료자에 대한 부분은 유권적인 사후보호로서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과의 유관적합성은 높다. 그러나 현재『범죄백서』에서 가석방·가출소·가종료자 부분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은 가석방 신청인원 중 가석방 허가율,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선고형기별 형의 집행률, 전체수형자 석방인원 중 가석방자의 비율 등과 같은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은 제1장 교정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 갱생보호사업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업무가 포함된 범죄예방정책국 업무의 하나이나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강제적인 사후보호가 아닌 임의적인 사후보호제도이다. 또한 갱생보호를 담당하는 기관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보호관찰의 업무영역이 아니다. 가석방, 가출소, 가퇴원자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갱생보호사업부분도 교정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제3장 '소년보호'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소년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와 미결구금의 기능을 담당하고, 소년원은 소년부판사의 심리결과에 따라 시설내 처분을 집행하는 시설이므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흐름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

고, 그 다음 소년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3장 '소년보호' 제2절인 소년분류심사원은 개설, 소년분류심사의 현황, 분류심사의 과학화· 전문화, 비행원인진단 기능 강화와 청소년비행예방 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비행예방 역량 강화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이 아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업무이므로 이를 소년분류심사원 부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제3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여 별도의 절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나. 내용의 적정성

1) 범죄자처우와 관련된 조직현황 및 연혁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를 다루고 있는 '범죄자의 처우' 편에서는 앞의 두 편과는 달리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현황 및 연혁과 인원에 대한 통계와 설명내용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현황 및 연혁 등에 관한 내용이 매년 변화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백서』에 매년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2)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처우 부분에서는 분류처우, 근로직능개발관련 처우(교도작업, 직업훈련), 교육교화관련 처우(교육활동), 복지후생관련 처우(급여 및 의료) 이외에도 교정사고와 처우불복제도와 같이 처우와 관련없는 수용기획관련 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제목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류처우는 처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수형자의 심리상태 및 생활태도 등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개별적인 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처우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경비처우급별 판정기준이나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과 같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까지 소개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

한편, 정책입안가들과 일반국민들이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처우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과교육참여인원, 검정고시합격인원, 기능자격취득실적에 대한 단순한 수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완수율, 합격률 등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함께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윤옥경 외, 2010b).

3) 보호관찰의 현황

제2장 '보호관찰'의 제2절에서는 보호관찰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관찰이란 협의의 보호관찰뿐 아니라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존스쿨,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하는 광의의 보호관찰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현황부분에서는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현황(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법상 보호관찰, 가석방, 임시퇴원, 가출소 등)과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실시현황, 죄명별 현황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난 1년간 보호관찰의 실시건수 중 협의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존스쿨 등의 실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특히, 현행 『범죄백서』에서는 협의의 보호관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제2절에서 전체 보호관찰현황을 처분유형별로 제시하고, 제3절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협의의 보호관찰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전체 보호관찰의 유형별로 총괄표를 제시한 후 업무영역별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의 주요 업무는 협의의 보호관찰 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각종 조사, 성구매사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 존스쿨, 전자감독,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현황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업무영역 중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조사에 대한 현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존스쿨, 전자감독,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업무영역별로 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대상 확대의 경향을 고려했을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조사와 함께 전자감독에 대한 현황자료는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제2절 보호관찰현황 8. 소년 보호관찰에서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년 보호관찰 죄명별 현황, 보호관찰 경력별 현황, 학생과 무직자 현황, 종료사유별 현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호관찰은 광의의 보호관찰로 협의의 보호관찰현황,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앞서 지적한 전체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소년보호관찰의 경우에도 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보호관찰에 대한 총괄표를 제시한 후 각 영역별로 대상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죄명별 현황, 시간별 현황, 집행분야별 현황, 준수사항위반 현황과 소년에 대한 조사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소년보호담당직원 관련 통계

교정과 보호관찰에서는 담당직원의 수와 함께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수용인원, 보호관찰직원 1인당 실시인원수 등과 같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수용인원이나 보호관찰직원 1인당 실시인원수는 재복역률이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과 같은 성과들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소년보호담당직원 1인당 보호소년의 수도 소년보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범죄백서』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3장

통계자료의 적절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3장

통계자료의 적절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1절 통계자료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

1. 용어의 적절성

『범죄백서』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에서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을 진단한 결과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용어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범죄의 동향부분에서 범죄유형별로 발생건수, 인구비,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에 대한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발생건수라는 용어사용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범죄발생건수는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건수를 집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신고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범죄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발생건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인지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일본에서는 이미 1966년부터 발생건수라는 용어 대신 인지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탁종연, 2008:24). 『범죄백서』에서도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인지건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백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구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구비라는 용어는 무엇에 대한 인구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범죄학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도 아니다. 범죄학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인 '범죄율'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범죄백서』에서 주요 죄명별 범죄발생건수나 처리건수를 제시할 때 강간(성폭

력포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범죄분석』의 일러두기에 따르면, 강간(성폭력포함)이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현행 『범죄백서』에서는 원자료인 『범죄분석』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강간(성폭력포함)이라는 표현은 표현자체가 이상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성폭력범죄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유형을 제시할 때 범죄와 사범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예: 강력범죄와 식품사범), 통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죄백서』의 일러두기에서는 형법범을 "형법각칙의 범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백서』에 사용되는 자료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의 일러두기에 따르면, 형법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백서』의 일러두기에서 형법범죄에 대한 용어정의를 『범죄분석』과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범죄율'의 제시

연도별 범죄발생추세의 분석이나 외국의 범죄발생추세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범죄발생 부분에서 범죄발생건수이외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즉 범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범죄백서』에는 중요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 범죄율에 대한 정보가 일관성있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아래에서 제시된 예를 보면, <표 I-14>의 강력범죄(흉악)의 발생 및 검거현황의 표에서는 범죄율(인구비)을 제시하고 있지만, <표 I-3>의 형법범 발생검거현황에서는 범죄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전년대비 증감률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범죄, 강력범죄, 전체소년범죄, 소년강력범죄(흉악), 소년강력범죄(폭력)에 대해서는 범죄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형법범, 특별법범, 재산범죄,

소년특별법범에 대해서는 범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되지 않은 범죄율 제시의 예〉

〈표 Ⅰ-3〉 형법범 발생 · 검거현황 (2003년~2012년)

구 분 / 연 도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률(%)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03	857,488	7.5	681,488	79.5	1,014,131
2004	826,886	-3.6	667,503	80.7	725,726
2005	825,840	-0.1	634,244	76.8	856,072
2006	828,021	0.3	640,296	77.3	849,482
2007	845,311	2.1	667,959	79.0	958,804
2008	897,536	6.2	709,117	79.0	1,014,392
2009	993,136	10.7	836,099	84.2	1,162,426
2010	939,171	-5.4	710,146	75.6	819,039
2011	997,263	6.2	678,817	68.1	740,372
2012	1,038,609	4.1	684,832	65.9	1,035,335

주: 대검찰청 범죄분석

〈표 Ⅰ-14〉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현황(2003년~2012년)

구 분 / 연 도	발생건수	인구비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03	20,416	42.2	19,367	94.9	29,796
2004	19,539	40.2	17,752	90.9	19,110
2005	19,941	40.9	17,059	85.5	20,082
2006	21,006	42.9	19,065	90.8	22,110
2007	20,922	42.4	18,708	89.4	22,787
2008	22,987	46.4	20,500	89.2	25,706
2009	25,791	51.8	23,808	92.3	29,995
2010	27,482	54.4	24,304	88.4	26,339
2011	29,248	57.6	24,633	84.2	25,881
2012	26,915	52.8	22,514	83.6	24,863

주: 대검찰청 범죄분석.

* 자료출처: 『범죄백서』, 2013, p. 46, p. 60

3. 단위, 주석, 출처표시 일관성과 정확성

『범죄백서』에서 쓰이는 단위는 '건수'와 '인원수'이다. 『범죄백서』의 일러두기에서는 제1편 제1장 범죄의 일반적 동향 및 제2장 각종 범죄의 동향」에서의 범죄발생현황은 건수로 표시(단, 마약류범죄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맞춰 인원수로 표시)하였고, 제1편 제3장 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에서의 범죄자발생현황 및 제2편 범죄의 처리에서의 범죄자처리현황은 인원수로 표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일러두기에 어떤 부분에서 단위가 건수이며, 어떤 부분에서 단위가 인원수인지를 개괄적으로 밝힌 것과는 별도로 명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본문에 제시되는 각 표와 도표에 단위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단결과 단위표시가 누락된 표나 도표가 매우 많았다. 그리고 아래의 예시와 같이 단위표시가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예시는 재산범죄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파이그램으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가 건수여야 하지만, 인원수(예: 배임 5,176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단위표시가 잘못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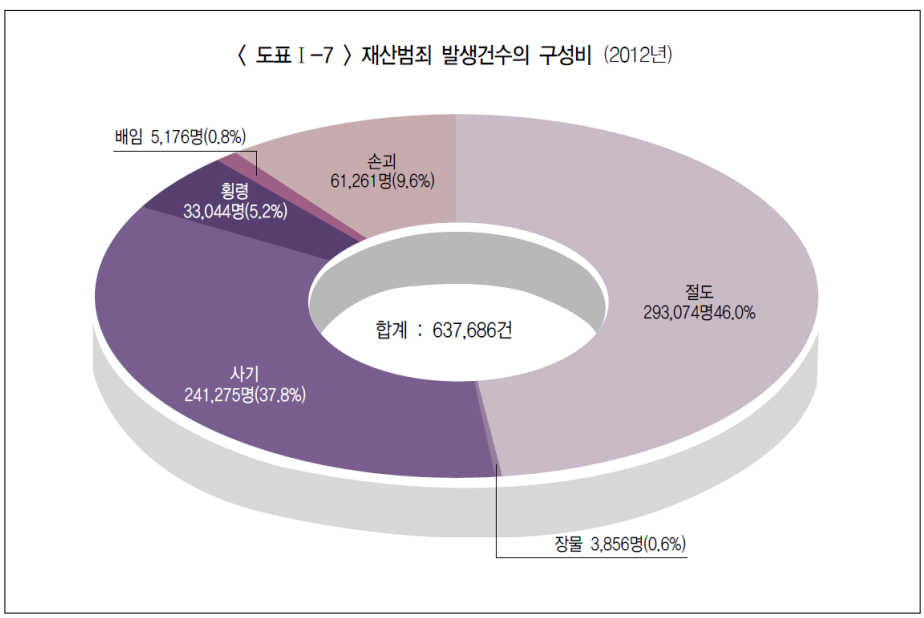

*자료출처: 『범죄백서』, 2013:55

4. 표와 도표 제목 위치의 적절성

사회과학분야에서 표의 번호와 제목은 표 위의 왼쪽 끝으로 정렬하여 제시하고,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에 중앙에 정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범죄백서』에서는 표와 그림 모두 위쪽의 중앙으로 정렬하여 제시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5.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범죄백서』에서 자료로 제공되는 통계표는 될 수 있는 대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진단해본 결과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첫째, 연도별 추세표에서 기간설정의 통일성 문제이다. 2013년에 발간된 『범죄백서』의 발간사에서는 전체 범죄동향의 경우에는 지난 30년간의 추세를 파악하고, 이외의 범죄동향 및 범죄자 유형별 동향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파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범죄백서』 전반에 걸쳐 지켜지지 않고, 추세자료의 기간이 30년, 10년, 5년, 2년 등으로 다양하였다. 추세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통계항목을 세심하게 선정하여 적어도 10년간의 변화양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율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비교의 목적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한 범죄율이 필요하므로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표에서는 범죄율이 일관성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성비 제시의 통일성의 문제이다. 아래의 예에는 구성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용자가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검정고시 합격률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감소하였는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이 더 높아졌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범죄백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표도 있고, 제시되어 있는 표도 있다. 비교를 위해서는 구성비가 필수적이므로 구성비가 필요한 표에서는 일관되게 구성비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구성비가 되지 않은 통계표의 예시〉

〈표 Ⅲ-40〉 여성수형자 학과교육 실적(2011년, 2012년)

(단위: 명)

구분 / 연도	학과교육					검정고시 합격			
	계	초등 기초반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계	중입	고입	고졸
2011	48	5	11	12	20	16	4	5	7
2012	26	-	8	8	10	16	4	5	7

넷째, 추세자료에서 증감율 계산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증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년도를 설정하고 기준년도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기준년도대비 증감율(예 :<표 I-10> 절도 수법별 발생건수)을 계산하는 방법과 전년대비 증감율을 계산하는 방법(예: <표 I-3> 형법범 발생·검거현황)이 있다. 『범죄백서』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되고 있는데, 2개년도를 비교할 때는 전년대비 증감율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다년도 추세분석에서는 기준년도대비 증감율을 계산하는 것이 추세의 변화를 파악하기 더 용이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년도 추세분석 자료에서 증감율의 계산은 기준년도대비 증감율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감율 계산방법의 예시〉

〈표 Ⅰ-3〉 형법범 발생 · 검거현황 (2003년~2012년)

구 분 / 연 도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률(%)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03	857,488	7.5	681,488	79.5	1,014,131
2004	826,886	-3.6	667,503	80.7	725,726
2005	825,840	-0.1	634,244	76.8	856,072
2006	828,021	0.3	640,296	77.3	849,482
2007	845,311	2.1	667,959	79.0	958,804
2008	897,536	6.2	709,117	79.0	1,014,392
2009	993,136	10.7	836,099	84.2	1,162,426
2010	939,171	-5.4	710,146	75.6	819,039
2011	997,263	6.2	678,817	68.1	740,372
2012	1,038,609	4.1	684,832	65.9	1,035,335

주: 대검찰청 범죄분석

〈표 Ⅰ-10〉 절도 수법별 발생건수(2003년~2012년)

구분 / 연도	계	침입 절도	치기 절도	차량이용 절도	기 타
2003	187,871(100)	77,980(100)	10,014(100)	2,462(100)	97,415(100)
2004	154,850(82)	53,430(69)	14,555(145)	2,337(95)	84,528(87)
2005	191,114(102)	69,690(89)	17,925(179)	3(0)	103,496(106)
2006	190,745(102)	65,255(84)	18,590(186)	110(4)	106,790(110)
2007	212,530(113)	72,911(93)	18,062(180)	3(0)	121,554(125)
2008	223,262(119)	73,603(94)	16,851(168)	1(0)	132,807(136)
2009	256,681(137)	81,036(104)	19,080(191)	1(0)	156,564(161)
2010	267,994(143)	80,083(103)	15,868(158)	-(0)	172,043(177)
2011	281,537(150)	77,335(99)	25,446(254)	-(0)	178,756(183)
2012	274,660(146)	91,093(117)	32,303(323)	3(0)	151,261(155)

주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 ( ) 안은 지수
3.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 자료출처: 『범죄백서』, 2013, p. 46. p. 56.

제2절 이용자 편의성

1.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여부 및 포괄성

『범죄백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은 보통 일러두기를 별도로 만들거나 통계표에서 주를 달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범죄백서』에서 "일러두기"에서 『범죄백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통계표에서 약칭으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러두기에 포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형법범, 특별법범, 업과치사상, 인구비, 검거율,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수형자, 미결수용자, 수용자 등 10가지 용어에 한정되어 있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범죄백서』 일러두기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

II. 용어 · 약칭

1. 용어정의

(1) 형 법 범 ----- 형법각칙의 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 특 별 법 범 ----- 형법범 이외의 범죄
(3) 업 과 치 사 상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및 중과실치사 · 중과실치상
(4) 인구비(단위:건) ----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5) 인구비(단위:명) ----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
(6) 검 거 율 ----- (검거건수/발생건수)×100
발생건수는 해당년도 발생건수이고, 검거건수는 해당년도 이전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검거건수도 포함
(7)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 선고받은 전체 형기에 대하여 가석방자가 이미 집행을 마친 형기가 차지하는 비율
(8) 수 형 자 -----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9) 미 결 수 용 자 -----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10) 수 용 자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포함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2. 특별법 약칭

(1)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교 특 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도 교 법 ----- 도로교통법
(4) 마약류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5) 보 건 특 조 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 부 수 법 ----- 부정수표단속법
(7) 부 정 경 쟁 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 성 매 매 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 성 폭 력 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오 수 분 뇨 법 -----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1) 음 비 게 법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2) 자 관 법 ----- 자동차관리법
(13) 자 손 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4)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특 가 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 폭 처 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7) 향 군 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범죄백서』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가장 부족한 부분은 형법범죄나 특별법범죄에 포함되는 세부 죄명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어서 제시하는 경우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범죄백서』에서 다양한 원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원자료를 생산하는 기관마다 범죄분류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범죄의 동향과 범죄의 처리 편에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원자료의 특별법 분류방식을 탈피하여 특별법범죄를 크게 교통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마약류범죄, 경제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컴퓨터범죄, 선거범죄 등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8가지 범죄유형 중 보건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각 범죄에 어떤 죄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만, 교통범죄, 환경범죄, 마약류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컴퓨터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상의 어떠한 죄명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를 집계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범죄자의 처우를 다루고 있는 제3편에서는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소년보호시설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 기관의 범죄분류방식은 범죄의 동향과 처리편에서 사용된 범죄분류방식과 상이하다. 그러나 세 기관의 범죄분류방식에 따른 범죄명에 대한 용어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정기관의 통계표에서 제시된 과실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호관찰의 통계에서 사용하는 폭력사범이란 앞의 범죄의 동향 및 처리편에서 사용하는 강력범죄(폭력)와 같은 분류기준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라 비교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범죄백서』가 일반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및 처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들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본안사건, 재기수사명령사건, 선도위탁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재범률이나 전과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범률에 관한 통계치는 보호관찰 재범률 하나만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범률 산

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 재범률은 재범산정의 시작시점(처분종료이후 혹은 처분집행중)과 종료시점(새로운 범죄의 발생시점 혹은 처분시점)은 언제이며, 추적기간은 얼마나 되며, 새로운 범죄를 산정할 때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도 포함하였는지의 여부 등 재범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사용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 여부

『범죄백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범죄백서』에 사용된 원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생겼을 때나 보다 심화된 통계자료를 구하기를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통계작성범위, 적용기준, 작성항목, 작성주기, 자료수집방법 및 체계 등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범죄백서』의 일러두기에서는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자료집인 『범죄분석』에 대해서만 통계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백서』에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외에도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통계연보』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러두기에 『범죄분석』이외에 『범죄백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백서』에 사용한 통계나 용어에 대한 문의나 추가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법무연수원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문의처(담당자)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범죄백서』 일러두기에서 통계산출근거에 대한 제시〉

Ⅰ. 통계 산출근거 및 단위

1. 이 『범죄백서』에서의 범죄건수 및 범죄자인원수 관련 통계는 대검찰청 범죄통계자료집인 "범죄분석"의 통계를 원용하고 있음
2. "범죄분석" 통계는 수사기관에서 작성 · 입력되는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 통계원표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써, 대검찰청 통합사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종합심사분석" 통계와는 입력인자의 상이로 인하여 다소간 차이가 생길 수 있음
3. 제1편 제1장 「범죄의 일반적 동향」 및 제2장 「각종 범죄의 동향」에서의 범죄발생현황은 건수로 표시(단, 마약류범죄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맞춰 인원수로 표시)
4. 제1편 제3장 「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에서의 범죄자발생현황 및 제2편 「범죄의 처리」에서의 범죄자처리현황은 인원수로 표시

제4장

자료의 수집, 편집 및 분석과 발간과정

제4장

자료의 수집, 편집 및 분석과 발간과정

제1절 자료수집 과정

1. 자료원(data source)과 자료의 질

『범죄백서』에서는 범죄의 발생현황뿐만 아니라 수사에서 교정단계까지 모든 형사사법의 활동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사용되는 자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별도의 정보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입력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한 후 통계집 형태로 이미 발간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와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4-1>은 이 두 가지 자료 유형의 구체적인 자료원을 정리한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원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이며,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등의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주체인 법무연수원에서는 다양한 형사사법기관들이 고유한 목적에 따라 자체의 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백서』에서 활용된 자료의 정확성과 타당성은 이러한 공식적인 범죄통계자료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표 4-1〉『범죄백서』의 자료원(data source)

『범죄백서』의 편제	자료 유형	
	정보입력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자료	관련부서의 내부자료
범죄의 동향편	• 대검찰청『범죄분석』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대검찰청 공안부 • 법무부 국제형사과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범죄의 처리편	• 대검찰청『범죄분석』 • 법원행정처『사법연감』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단 • 대검찰청 형사1과 • 대검찰청 형사2과 • 대검찰청 공판송무과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범죄자의 처우편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범죄예방정책연보』 • 법무부 교정본부『교정통계연보』	-

2. 자료수집 방법

『범죄백서』에 활용될 자료의 수집은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의『범죄백서』 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범죄백서』 담당자는 각 기관에서 전년도의 공식범죄통계자료집을 발간하면, 해당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대검찰청『범죄분석』,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교정통계연보』 등의 통계자료집은 각 기관의 입력시스템을 통해서 입력된 자료를 추출하여 발간한 것이다.『범죄분석』은 범죄통계입력시스템의 입력자료,『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는 보호관찰소의 보호통합정보시스템(IPIS)과 소년보호기관의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에서 수집되는 자료, 마지막으로『교정통계연보』는 보라미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따라서 이들 공식 범죄통계자료에 대해서 데이터파일 형식의 원자료(raw data)를 수집하여『범죄백서』 발간을 위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한 범죄통계의 원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본 연구결과 유관 형사사법기관 간에도 각 기관이

수집한 범죄통계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범죄백서』의 발간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원자료를 받아 이를 다시 가공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범죄분석』의 경우에는 발간된 책자에 수록된 통계표를 엑셀형식의 자료로 받아서 활용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범죄예방정책연보』와 법무부 교정본부『교정통계연보』의 경우에는 필요한 통계표를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에게 요청한 후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다.

법원의 관련통계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소속부서인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도 원자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관의 폐쇄성으로 인해 각 조직에서 내부적인 활용을 위해 작성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 범죄예방정책, 교정본부로부터 원자료를 받더라도 이를 수집, 편집, 분석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자료가 아닌 발간된 자료의 통계표를 엑셀형식의 자료로 받아서『범죄백서』발간에 활용하는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분산형 통계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공은배 외, 2011: 25-26), 현재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각각의 공식범죄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내에서도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등 정책수행 분야별로 공식범죄통계를 각각 생산·분석·관리하여 별도의 통계집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법무부내에 통계작성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통계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각 통계마다 분석단위, 집계기준 등이 달라 자료간의 호환성과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죄명분류방식이다. 아래의 <표 4-2>에서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기관별로 죄명분류방식이 매우 상이하다.

〈표 4-2〉 대검찰청의 죄명 분류표

분류	죄명
재산범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력범죄 (흉악)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력범죄 (폭력)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 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조범죄	통화, 유가증권 · 인지 · 우표, 문서, 인장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풍속범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음란행위, 도박과 복표, 신앙
과실범죄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기타형법범죄	명예, 권리행사방해, 신용 · 업무 · 경매, 주거침입, 비밀침해, 유기, 낙태, 아편, 교통방해, 공무방해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명, 무고, 공안을 해하는 죄, 내란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기타
특별법범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항질서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병역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상표법, 소방법, 수산업법, 수질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여신전문금융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외국환거래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직업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총포 · 도검 · 화약류단속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기타

* 자료출처: 김은경 외, 2009: 48

〈표 4-3〉 보호관찰의 죄명 분류표

분류	죄명
강력사범	강도, 공용건조물방화, 방화, 살인, 존속살인, 준강도, 특수강도, 특가법위반
경제사범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위반, 관세법위반, 부동산, 부정수표, 신용카드저작권법, 특가법위반
교통사범	교통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마약사범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성폭력사범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가법위반
사기횡령 사범	혼인빙자간음, 배임,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사범	절도, 원독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주거침입,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사범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공갈, 미성년자약취, 범죄단체가입, 상해, 영리약취, 존속폭행, 특가법위반
풍속사범	경윤, 경정법위반, 음란필름제조, 청소년보호법위반, 간통, 도박, 성매매알성등해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타사범	가스방출, 강요, 건조물침입, 경매방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공문서위조

* 자료출처: 윤옥경 외, 2010a: 21

〈표 4–4〉 교정의 죄명분류

분류	죄명
재산범죄	절도, 사기, 부당이득, 횡령, 배임, 장물, 손괴, 점유, 준점유강취
강력범죄	방화,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정조(강간등), 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해상강도, 공갈, 폭력, 범단조직, 총포,도검,화약, 유기, 특가법(강력범죄)
위조범죄	통화, 유가증권,우표,인지, 문서, 인장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선거방해, 뇌물, 증뢰, 인권옹호방해, 도주원조, 권리행사방해
풍속범죄	신앙, 간통, 음행매개, 도박, 혼인빙자간음, 윤락행위방지법, 광고물등관리법, 미성년자보호법, 유기장법, 풍속영업규제법, 사행행위규제법
과실범죄	실화
선거범죄	대통령선거법, 국회위원선거법, 국민투표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식품위생범죄	식품위생법, 보건법, 공중위생법, 공중목욕장업법, 축산물위생업법
마약범죄	사용불가죄명(아편에관한죄), 사용불가죄명(마약단속), 사용불가죄명(특가법(마약))
공안사범	내란의죄, 외환의죄, 특수범죄처벌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구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국가보위법, 비상조치특별법
공안관련사범	긴급조치, 포고령위반, 계엄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집시법, 국보위특별조치법, 밀항단속법, 노동
병역사범	병역법
교통사범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선박안전법, 해상 항만운송사업법, 유선및도선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항질서법, 항공법, 특가법(교통사범), 고속국도법, 자동차관리법

경제사범	조세법, 관세법, 이자제한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가중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담배사업법(담배전매법), 물가안정 공정거래법, 국유재산법, 외자도입법, 홍삼전매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상호신용금고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금융실명거래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양곡관리법, 수산업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계량법, 무역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석유사업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염관리법, 특허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장법, 석탄수급조정조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건설업법, 중기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 국고에관한죄, 경제안정법, 소비자보호법, 통화금융, 방문판매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기타	헌법 정당 국회 선거, 법원 법무, 행정일반, 지방행정, 치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법1(형법), 형사법2(특별법), 재경일반, 외무, 국방(군형법등), 문교체육, 문공과학, 보건사회, 노동, 농림수산, 상공, 건설, 교통체신, 농어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해화학, 기타3중분류3, 기타3중분류2, 기타2중분류1, 기타3중분류1, 기타3중분류4, 위조유가증권수입등, 특수강도(예비음모), 위조사기호행사, 약취매매, 중분류 기타, 국방(군형법등), 형법,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회합통신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각성제)

* 자료출처: 윤옥경 외, 2010b: 27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에 통계작성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통계기관을 만들고,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범죄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도 법무연수원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원자료를 수집하여 가공한다면, 동일한 범죄분류체계에 따라 자료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범죄분류체계에 따라 형사사법의 각 정책영역별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한다면, 범죄발생에서 수사, 기소, 재판, 처분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배치하고 분석함으로써 범죄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고, 기소된 사람들 중의 몇 %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몇 %가 교도소에 보내지며, 교도소에 보내진 사라들의 몇 %가 석방되는가 등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자료를 활용할 경우 항목과 항목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들과의 교차분석 등을 통해서 원자료들이 의미있는 정보로서 재가공될 수 있다. 그러나 발간된 통계표로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기껏해야 추세자

료를 만들거나 인구수를 고려한 범죄율을 산출하거나 구성비를 산출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분석만이 가능할 뿐이다.

각 기관 간 자료의 비교가능성과 심화분석의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범죄백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으로부터 원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재가공하여『범죄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연수원 내에 자료의 수집, 편집, 분석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범죄학이나 사회과학분야의 통계 전문가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자료의 편집·분석 및 발간과정

1. 자료의 편집과 분석과정

『범죄백서』의 자료편집과 분석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에 소속된 한 명의『범죄백서』담당자(계장)가 담당한다.『범죄백서』담당자는 범죄학이나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되어 일정기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이며, 대개 1년 단위로 교체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요약통계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별도의 편집과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석과정도 수집한 통계표에 인구수를 고려한 범죄율, 구성비, 연도별 증감율 등을 산출하거나 자료를 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도표를 작성하는 등 매우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범죄백서』에서 활용되는 자료의 성격상 편집과 심화된 분석이 요구되지 않으며, 범죄통계자료의 분석을 전담할 조직도,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기관인 사법통계국(Burea of Justice Statistics; BJS)에서 범죄학자 및 통계학자를 고용하여 연방수사국(FBI)에서 전국의 17,000여 개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범죄관련 자료인 UCR(Uniform crime Report) 및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을 포함하여, 범죄, 범죄자, 범죄피해자 및 사법시스템의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원자료 형태로 수집하

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홍영오·김한균, 2012:5)[10]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법무연수원 자체 내에 통계분석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가 분석과 편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집필 및 발간과정

자료의 수집·편집과 분석과정이 완료되면, 집필이 시작된다. 공식 범죄통계를 가공한 경찰청의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정책연보』,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가 관련된 통계표만을 나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비해, 『범죄백서』는 각 통계표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집필과정이 중요하다.

집필은 법무연수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편집위원회는 검찰,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등 각 기관에서 법무연수원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특집편을 제외하고는 『범죄백서』의 편집체계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집필을 분담하고, 전체 발간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집필은 범죄의 발생과 처리는 검찰 소속 사무관, 교정은 교정사무관,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사무관, 소년보호는 보호직 사무관이 담당하고, 매해 주제가 바뀌는 특집편은 연구위원(검사)들이 집필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집필영역이 집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영역별로 나뉘어져 있어 소년범죄의 발생과 처리·동향을 한 편에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고, 갱생보호와 같이 교정영역에 다루어야 할 분야가 법무부 업무분장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되어 있어 보호관찰사무관이 집필을 담당한다. 집필이 끝나면 출판을 위한 인쇄본을 만들고 인쇄본에 대한 교정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정은 집필자의 검토와 집필진과의 상호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백서』의 자료수집, 편집, 분석과 집필 및 검수과정은 모두 법무연수원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각 정부부처에서는 발간하는 백서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편집, 집필, 그리고 검

10) 이외에도 BJS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 및 출판하는 자료를 모두 집약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강지현, 2012:93).

수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청소년백서』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유관연구기관인 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년도에 발간된 백서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도와 백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편집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수과정에도 외부전문가를 검수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의 경우에도 단순 발생·검거건수 위주의 통계표 산출에 그쳐 분량은 많으나 유가치한 분석정보가 많지 않아 정책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 범죄통계의 발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수사국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범죄통계 분석활용 추진팀」을 구성하여 전체 편집체계의 개편, 원자료의 편집 및 분석, 발간작업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홍영오 외, 2012).

제5장

주요 국가의 범죄백서 사례

제5장

주요 국가의 범죄백서 사례

본 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범죄백서의 편집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범죄백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범죄백서』라는 명칭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국가는 일본뿐이었으며, 호주에서는 『Australian crime: facts and figures』라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Criminal Justice in Germany』라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 영국은 『Crime in England and Wales』라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나 '경찰집계 범죄(Police Recorded Crime)'와 '범죄피해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CSEW)'에 대한 분석 중심의 보고서일 뿐 검찰이나 법원, 교정단계에 대한 통계까지 포함된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지는 않는다. 미국 역시 'UCR(Uniform Crime Report)'과 'NIBRS(National Incident Based Reporting System)' 등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에 대한 분석 보고서일 뿐 우리나라의 『범죄백서』 형식의 보고서를 발간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백서』 형식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본, 호주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1절 일본의 범죄백서

1. 일본 『범죄백서』 개관

일본 『범죄백서』의 목적은 법무성 홈페이지에 "범죄백서는 범죄방지와 범죄자

의 개선·갱생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과 그 실현을 위해 각 시대의 범죄 정세와 범죄자 처우의 실정을 보고하며, 특히 형사정책 상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백서이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196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11] 범죄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平成26년(2014년)판 『범죄백서』는 2014년 11월 14일[12] 각료회의에 보고된 이후 공표되었다.

『범죄백서』는 법무총합연구소에서 『경찰청 통계』(경찰청형사국), 『검찰통계연보』(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 『사법통계연보』(최고재판소사무총국), 『교정통계연보』(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 『보호통계연보』(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13]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 근거하여 매년 발간된다. 다만, 『범죄백서』의 注에 경찰청 통계는 1963년까지는 『犯罪統計書(범죄통계서)』라는 명칭 이었지만, 1964년 이후는 「昭和(平成)○年の犯罪」라고 개제되어 있으므로 백서에서는 일괄적으로 "경찰청 통계"라고 지칭한다고 설명되어 있다[14].

자료의 범위는 당해 7월말일까지 입수된 범위 내에서의 전년도 자료이다. 예를 들어, 平成26년(2014년)판 『범죄백서』는 2014년 7월 말일까지 입수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平成25년(2013년)의 자료를 분석한다. 平成25년 통계에서 백서 원고 작성시 정규 통계서가 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된다. 해당 자료의 수치는 임시 집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나중에 간행되는 정규 통계서의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다음 년도 이후의 『범죄백서』에서 적절하게 정정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정규 통계서의 수치가 정정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15](법무총합연구소, 2014).

---

11) 『범죄백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http://hakusyo1.moj.go.jp/jp/61/nfm/mokuji.html), 관보판매소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영어판은 「WHITE PAPER ON CRIME 2012」이라는 명칭으로 게시되어 있다(http://hakusyo1.moj.go.jp/en/61/nfm/mokuji.html). 2014년 12월 29일 현재 平成22년(2011년)판 『범죄백서』까지만 영문판이 게시되어 있고, 그 이후의 『범죄백서』는 아직 올라있지 않다.

12) 항상 11월 14일에 공표되는 것은 아니고, 11월 10일을 전후에 각료회의를 거쳐 공표되고 있다.

13) 각 기관의 통계에 수집의 근거규정, 주된 조사시 매체 및 작성시기, 주된 조사항목, 데이터의 집계부서, 간행물, 홈페이지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는 김지선 외(2014)의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pp. 176~189 참조.

14) 이 외에도 (2) 총무성 통계국 「국세 조사」및 「인구 추계」를 본 백서에서는 일괄적으로 "총무성 통계국 인구 자료"라고 부른다. (3) 1972년 이전 통계 자료는 1972년 5월 14일 이전의 오키나와 해당분의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4) 平成 원년 분의 통계 자료는 昭和 64년 1월 1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의 수치를 포함한다. (5) 자료의 편찬 원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2001년 1월 중앙 부처가 재구성된 이후의 부처 이름을 사용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2. 平成26년(2014년)판 『범죄백서』의 편집체계

平成26년(2014년)판 『범죄백서』의 편제는 크게 6편, 28장, 92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00여 페이지 정도로 발간되고 있다. 6편은 1) 범죄의 동향, 2) 범죄자의 처우, 3) 소년비행의 동향과 비행소년의 처우, 4) 각종 범죄자의 동향과 처우, 5) 범죄피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집 주제인 6) 절도사범과 재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1〉 일본 『범죄백서』의 체계와 구성

편	장	절
제1편 범죄의 동향	제1장 형법범	제1절 주요 통계 데이터
		제2절 일반 형법범
	제2장 특별법범	제1절 주요 통계 데이터
		제2절 주요 특별법범
	제3장 각종 범죄	제1절 교통범죄
		제2절 재정경제범죄
		제3절 사이버범죄
	제4장 주요 외국의 범죄 동향과의 비교	제1절 주요 범죄
		제2절 살인
		제3절 절도
	제5장 국외에서의 일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	제1절 국외에서의 일본인 범죄
		제2절 국외에서의 일본인 범죄피해
제2편 범죄자 처우	제1장 개요	
	제2장 검찰	제1절 피의자 사건의 접수
		제2절 피의자의 체포와 구금
		제3절 피의자 사건의 처리
	제3장 재판	제1절 확정 재판
		제2절 1심
		제3절 상소심
		제4절 재판원제도
	제4장 성인 교정	제1절 형사시설 수용 상황
		제2절 수형자 처우 등
		제3절 형사시설 운영 등

15) 平成20년(2008년)부터 24년(2012년)까지 경찰청의 통계는 통계청에서 계속 조사 중이다(법무총합연구소, 2014).

편	장	절
		제4절 미결 구금자 등의 처우
		제5절 민관 협동에 의한 형사시설의 정비 · 운영
	제5장 갱생보호	제1절 가석방과 생활 환경의 조정
		제2절 보호관찰
		제3절 응급 구호 등 · 갱생 긴급 보호 조치
		제4절 사면
		제5절 관민 협동에 의한 형사시설의 정비 · 운영
	제6장 형사사법 · 형사정책의 새로운 움직임	
	제7장 형사사법에서의 국제 협력	제1절 형사 사법의 국제적인 대응 동향
		제2절 범죄자의 국외 도피 · 범죄인 인도
		제3절 수사 · 사법에 관한 국제 협력
		제4절 국제 수형자 이송
		제5절 형사사법 분야의 교육협력 및 법제도 정비지원 등
제3편 소년 비행의 동향과 비행 소년의 처우	제1장 소년 비행의 동향	제1절 소년 형법범
		제2절 소년 특별법범
		제3절 우범소년
		제4절 가정과 학교에서의 비행
	제2장 비행소년의 처우	제1절 개요
		제2절 소년사건의 검찰 · 재판
		제3절 소년 감별소에서의 감별
		제4절 소년원 처우
		제5절 소년 보호관찰
	제3장 소년의 형사재판	제1절 개요
		제2절 기소와 형사재판
		제3절 소년 수형자
제4편 각종 범죄자의 동향과 처우	제1장 재범 · 재비행	제1절 검거
		제2절 검찰 · 재판
		제3절 교정
		제4절 보호관찰
		제5절 재비행 · 재범 소년
	제2장 외국인 범죄자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상황 등
		제2절 범죄의 동향
		제3절 처우
		제4절 외국인 비행 소년의 동향과 처우
	제3장 폭력단 범죄자	제1절 조직의 동향
		제2절 범죄의 동향

편	장	절
		제3절 처우
	제4장 약물범죄자	제1절 범죄의 동향
		제2절 단속 상황
		제3절 처우
	제5장 노인범죄자	제1절 범죄의 동향
		제2절 처우
	제6장 정신장애범죄자 등	제1절 범죄의 동향
		제2절 형사 절차의 상황
		제3절 심신상실자 등 의료관찰제도
제5편 범죄피해자	제1장 통계상의 범죄피해 동향	제1절 피해건수
		제2절 신체범에 의한 피해
		제3절 재산범죄 피해
		제4절 성범죄피해
		제5절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제6절 아동의 범죄피해
	제2장 형사사법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려	제1절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관련 제도
		제2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급부금지급제도 등
제6편 절도사범과 재범	제1장 서론	
	제2장 절도사범의 동향	제1절 인지건수·검거건수·검거인원 추이
		제2절 절도사범 증감요인 고찰
		제3절 검찰
		제4절 재판
		제5절 교정
		제6절 갱생보호
		제7절 소결
	제3장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실정	제1절 검찰
		제2절 교정
		제3절 갱생보호
		제4절 다기관 연계에 의한 대처
	제4장 특별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전체 대상자 조사결과
		제3절 벌금처분자의 실태와 재범상황
		제4절 전과가 없는 절도사법의 실태와 재범상황
		제5절 전과가 없는 침입절도사법의 실태와 재범상황
	제5장 결론	제1절 형사처분의 초기 단계에서의 처우 등의 중요성
		제2절 절도사범의 특성 등을 감안한 처우의

편	장	절
		바람직한 상태
		제3절 절도사범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4절 관계기관간 연계 강화

『범죄백서』의 편제에 기초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편 "범죄의 동향"편[16]에서는 형법범, 특별법범, 각종 범죄, 주요 외국의 범죄 동향과의 대비, 국외에서의 일본인 범죄와 범죄피해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형법범에 대해서는 주요 통계데이터에서 인지건수[17]와 발생률[18], 검거건수[19], 검거인원 및 검거율[20]에 대한 통계와 최근 2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일반 형법범 분야에서는 절도와 절도를 제외한 일반 형법범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절도를 제외한 일반형법범의 주요 죄명은 살인, 강도, 상해·폭행·협박, 사기, 공갈, 횡령, 강간, 강제추행, 방화,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기물파손, 뇌물수수 등 공무원범죄, 조직범죄 등이다. 다만 인지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등의 추이 이외에 죄명에 따라서 제시한 통계가 다소 상이한데, 상해·폭행·협박은 발생장소별 인지건수, 사기는 피해총액의 추이, 강제추행은 발생장소별 인지건수, 뇌물수수 등 공무원범죄는 공무원 유형별 및 죄명별 신규 접수 및 종국처리인원, 조직범죄는 검찰청 신규 접수인원[21], 몰수 및 추징금액의 추이 등이 제시되어 있다. 특별법범에 대해서는 주요 통계데이터에서 주요 죄명별로 검찰청 신규접수인원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죄명은 道交위반[22], 각성제단속법위반, 경범죄법위반, 폐기물처리법위반, 총도법위반, 입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풍속적정화법위반, 보관장소법위반, 대마

16) 제1편의 주요 자료 출처는 경찰청통계, 총무성 통계국의 인구자료, 법무성 형사국 자료, 검찰통계연보, 형사통계연보, 경찰청 교통국 통계, 사법통계연보, 최고재판소사무총국 자료, 국세청 자료, 경찰청 생활안전국 자료, 외무성 영사국 자료 등이다.

17) '인지건수'는 범죄에 대해 피해 신고, 고소, 고발 기타 단서에 따라 경찰 등이 발생을 인지한 사건의 수를 뜻한다. 1965년까지는 '발생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66년부터 '인지건수'로 변경되었다(법무총합연구소, 2014, 이하에서도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일본 『범죄백서』 범례의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참고하였다).

18) 인구 10만 명당 인지건수를 뜻한다.

19) 경찰 등이 검거한 사건의 수를 의미하며, 검찰에 송치·송부한 건수 외에도 경범죄 처분건수 등도 포함한다.

20) 검거 건수/인지 건수 × 100

21) 검찰이 인지 또는 직접 접수한 사건 및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및 국세청 감찰관 포함)으로부터 송치·송부된 사건의 인원을 말한다.

22)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법위반, 기타 등이다. 또한 주요 특별법범으로서 안보관계, 환경·풍기관계, 아동복지법위반, 스토커규제법위반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분석하였다. 각종 범죄 부분에서는 교통범죄, 재정경제범죄(세법위반, 경제범죄, 지적재산관련 범죄), 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와 사기, 음란물배포,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상표법, 저작권법위반 범죄등 네트워크 이용범죄)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외국(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범죄동향과의 비교 부분에서는 주요 범죄, 살인, 절도 등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외에서의 일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 다루고 있다.

제2편 "범죄자 처우"편[23]에서는 개요, 검찰, 재판, 성인교정, 갱생보호, 형사사법·형사정책의 새로운 움직임, 형사사법에서의 국제협력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개요부분에서 성인 범죄자가 검거된 이후의 형사사법 단계별 처리절차[24]에 대한 흐름도를 제시한 후, 경찰 등에 검거된 자가 검찰, 재판, 교정 및 갱생 보호의 각 단계에서 받는 처우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각 단계별 검찰청에서의 신규 접수인원, 공판청구인원, 약식청구인원, 불기소인원, 법원에서의 재판확정인원, 유죄인원(사형, 징역·금고, 집행유예, 벌금·과료), 무죄인원 등을 제시한다. 형사시설에서는 입소 수형자 인원을,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개시인원, 가석방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인원을 제시한다. 검찰 부분에서는 검찰청에 신규로 접수된 인원,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인원, 피의사건의 처리실태를 분석하였고, 재판부분에서는 재판확정인원의 추이를 재판내용별로 제시하고, 제1심의 종국 처리인원, 종국 재판에 대한 항소율, 고등법원의 항소심의 종국 처리인원, 파기인원 및 파기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성인교정부분에서는 형사시설(형무소, 소년형무소, 구치소) 및 성매매방지법 5조(권유 등)의 죄를 범하고 보도처분(補導処分)된 성인 여자가 수용되는 보도원(補導院)에 수용된 인원, 형사시설의 수용상황(수용인원과 인구비 추이, 형사시설의 수용률 등), 수형자의 처우, 형사시설의 운영, 미결구금자의 처우 및 민간자금의

23) 제2편의 주요 자료 출처는 검찰통계연보, 교정통계연보, 보호통계연보, 사법통계연보, 최고재판소사무총국 자료, 교정통계연보, 총무성 통계국 인구자료, 법무성 교정국 자료, 행형통계연보, 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 자료, 법무통계연보, 경찰청 형사국 자료, 법무성 형사국 자료 등이다.

24) 일본에서 경찰 등이 검거한 사건은 경범죄 처분(형사소송법 246조 단서에 따라 검찰이 미리 지정한 범죄의 정황, 특히 경미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성인에 의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직원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절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된 것이나 범칙금의 납부가 있던 도로 교통법 위반을 제외하고 모든 검사에게 송치된다.

활용방식(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통해 운영되는 형사시설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갱생보호부분에서는 중앙갱생보호심사회,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가석방제도, 보호관찰, 응급 구호 및 갱생긴급보호의 목적과 사면의 유형 등을 소개한 후 처우관련 현황을 분석하였고, 보호사, 갱생보호시설, 자립준비 홈, 민간협력단체(BBS運動: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갱생보호여성회, 민간협력고용주) 및 범죄예방활동에 현황을 제시하였다. 형사사법과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범죄정세의 변화에 입각한 형벌 법규의 정비에 대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된 범죄자의 처우,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시책, 소년법제의 주요 개정 현황, 범죄대책회의 결과, 피의자국선 변호인 제도,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활동,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구축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형사사법의 국제적인 대응 동향(국제조직범죄 대책 및 테러 대책, 약물범죄대책, 자금세탁방지대책, 아동에 대한 범죄대책, 부패범죄대책, 사이버범죄대책, 증권·금융범죄대책, 지적재산권침해대책 및 국제형사재판소), 범죄자의 국외 도피 및 범죄인 인도(국외도피 피의자 인원의 추이, 죄종별, 국적별 국외도피 피의자 인원 및 국외도피 범죄인의 인도 인원), 수사·사법에 관한 국제협력(수사공조, 사법공조, ICPO(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를 통한 협력 등), 국제 수형자 이송현황, 형사사법 분야의 교육 협력 및 법제도 정비방안(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원(UNAFEI)의 활동, 법제도정비지원) 등에 대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제3편 "소년비행의 동향 및 비행소년의 처우"편[25]에서는 소년비행의 동향, 비행소년의 처우, 소년의 형사재판을 다루고 있다. 소년비행의 동향편에서는 소년 형법범, 소년 특별법범, 우범소년, 가정과 학교에서의 비행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의 개요를 기술하고,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가정법원 송치까지의 절차, 가정법원에서의 절차(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 소년감별소의 감별, 가정법원의 심판), 보호처분에 관한 절차(가정법원의 결정

25) 제3편의 주요 자료 출처는 경찰청 통계, 법무성 통계, 총무성 통계국 인구자료, 경찰청 교통국 통계, 사법통계연보, 경찰청 생활안전국 자료, 검찰통계연보, 교정통계연보, 보호통계연보, 소년교정보호통계, 소년교정통계연보, 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 자료 등이다.

에 의한 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아동양호시설 송치, 소년원수용과 가퇴원 후의 보호관찰) 등을 소개하였다. 소년사건의 검찰과 재판, 소년감별소에의 감별 입·퇴원상황(소년감별소 성별 입소인원의 추이 및 여자비율, 피수용자의 특징(성별, 연령층별), 퇴소자 인원 및 퇴소사유별 구성비)과 감별업무(소년감별소 송치 이후의 절차, 감별판정구분별 감별 심판결정, 수용감별 이외의 감별(가정법원 청구에 의한 재택감별, 법무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의뢰감별, 일반 소년 감별 등)), 소년원의 처우, 소년의 보호관찰 등을 다루고 있다. 소년의 형사재판 부분에서는 소년의 기소와 형사재판, 형의 집행 및 가석방에 대해 소개하고, 역송사건(가정법원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소년 수형자의 인원 등 소년 수형자의 처우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4편 "각종 범죄자의 동향과 처우"편[26]에서는 재범·재비행, 외국인범죄자, 폭력단범죄자, 고령범죄자 및 정신장애범죄자 등을 다루고 있다. 재범·재비행 부분은 본 연구의 목적인 범죄백서 개편 시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제1장 재범·재비행 부분에서는 검거, 검찰·재판, 교정, 보호관찰, 재비행·재범소년을 다루고 있다. 1절 검거단계에서는 일반 형사범으로 검거된 재범자[27]의 인원 및 재범자율[28]의 추이와 일반 형사범으로 검거된 성인의 전과자[29] 인원 및 전과자 비율[30]의 추이를 다루고 있다. 2절 검찰과 재판단계에서는 죄명별 기소인원 중 전과자[31]의 인원과 비율, 범행시 신상별 인원을 다루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유무별 인원 및 취소사유별 취소인원의 추이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취소사유 중 재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에 처해진 것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가 된 사람의 추이를 기술한다. 3절 교정단계에서는 입소 수형자 인원 중 재입소인원 및 재입소비율[32]과 출소 수형자의 재입소상황(2004년과 2009년

---

26) 제4편의 주요 자료 출처는 경찰청 통계, 경찰청 통계국 자료, 경찰청 형사국 자료, 검찰통계연보, 최고재판소사무총국 자료, 교정통계연보, 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 자료,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자료해상보안청 경비구난부 자료, 내각부 자료, 법무성 형사국 자료, 재무성 관세국 자료, 사법통계연보, 보호통계연보 등이다.

27)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외한 범죄에 의해 검거된 적이 있는데 다시 검거된 자

28) 검거인원 중에서 재범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29)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외한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자

30) 성인 일반 형사범 검거 인원 중에서 전과자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31)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

32) 입소 수형자인원 중에서 재입소자의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출소 수형자 중에서 촐소한 해를 포함하여 5년과 10년간 누적재입소율[33](출소사유별, 죄명별, 입소 횟수별),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출소 수형자의 2년 이내 누적재입소율의 추이, 입소 수형자의 입소 정도별 취업상황 및 주거상황 등을 다루고 있다. 4절 보호관찰단계에서는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에 있어 전과자의 보호관찰 개시 인원 및 전과자비율[34]의 추이, 보호관찰이 종료된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 중 재처분율(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에 의해 형사처벌 등[35]을 받은 자가 차지하는 비율) 및 취소율(준수 사항 위반 또는 재범에 의해 가석방 및 보호 관찰 부착 집행 유예가 취소 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등의 추이 및 취소·재처분율[36] 추이 등을 다루고 있다. 5절 재비행·재범소년 부분에서는 소년의 재비행의 인원 및 추이(일반 형법범으로 검거된 인원 중 재비행소년의 인원과 재비행소년율의 추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처분 경력, 비행명별 보호처분 경력소년의 인원 및 비율, 소년원 출원자의 재입원 상황,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처분 상황(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호관찰이 종료된 보호관찰 처분 소년과 소년원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비행이나 재범을 저질러 새로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37]을 받은 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는 범죄자 유형을 외국인범죄자, 폭력단범죄자, 약물범죄자, 고령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로 구분하여 범죄동향, 각 범죄자 유형별 인원과 검거인원 및 처리상황을 다루고 있다. 단, 범죄자 유형별 분석은 모든 범죄자 유형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항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유형별로 상이하게 분석하였다.

제5편 "범죄피해자[38]"편[39]에서는 제1장에서 통계상의 범죄피해의 동향을 개관하고, 피해건수, 신체범에 의한 피해인원, 재산범에 의한 피해인원, 성범죄에 의한

33) 각 연말까지 재입소한 자의 누적 인원의 비율
34) 보호관찰 개시인원에서 전과자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35)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그 기간 중에 확정된 것에 한한다.
36) 취소나 재처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비율(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 계산)
37) 시설 송치 신청에 의한 보호 처분 및 기소 유예 처분을 포함한다. 형사재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확정된 것에 한한다.
38) "피해자"라 함은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하지만, 방화 및 공무 집행 방해 등의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범죄에 대해서는 방화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폭행을 당한 공무원 등을 "피해자"로 취급한다.
39) 제5편의 주요 자료 출처는 경찰청 통계, 총무성 통계국 인구자료, 경찰청 생활안전국 자료, 최고재판소사무총국 자료 등이다.

피해인원,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2장에서는 형사사법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다루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에 각종 지원제도(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제도,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참가, 교정·갱생보호단계에서의 피해자지원, 소년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등)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급부금지급제도, 피해회복분배금지급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인신매매피해자보호제도 등을 다루고 있다.

平成26년(2014년)판『범죄백서』에는 범죄피해조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平成24년(2012년)판『범죄백서』에는 제4회 범죄피해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平成26년(2014년)판『범죄백서』발간 해에는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법무총합연구소에서 2000년 국제범죄피해실태조사에 참가하기 시작한 이래 4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범죄백서』에 제시하고 있다. 2012년 1월에 제4회 조사를 실시하였고('안전·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라는 제목으로 실시함),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각 조사는 전국의 16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층화무선추출법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각 조사 때마다 조사대상자의 수와 조사방식이 달랐다. 2000년과 2004년 조사에서는 3,000명, 2008년 조사에서는 6,000명, 2012년 조사에서는 4,000명이었고, 조사방식도 1회에서 3회까지는 방문조사를 통한 면접조사였으나 2012년 4회 조사 때에는 우편조사로 실시하였다[40]. 平成24년(2012년)판『범죄백서』에 제시된 피해조사 결과는 과거 5년간 및 지난 1년간(2011년)의 피해율, 신고율, 그리고 범죄에 대한 불안 및 치안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平成26년(2014년)판『범죄백서』에서는 특집 주제를 제6편에서 다루고 있다. 제6편 "절도사범과 재범"편[41]에서는 절도사범의 동향과 절도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대책의 현황을 소개하고, 절도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대책의 전제가 되는 실태파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절도사범을 특집 주제로 택한 이유

40) 平成24년(2012년)판『범죄백서』제5편 3장 1절(http://hakusyo1.moj.go.jp/jp/59/nfm/n_59_2_5_3_1_0.html) 참조

41) 제6편의 주요 자료 출처는 경찰청 통계, 총무성 통계국 인구자료 및 노동력조사, 검찰통계연보, 사법통계연보, 교정통계연보, 법무성대신관방사법법제부 자료, 보호통계연보, 법무성 총합연구소의 조사 등이다.

를 소개하고, 제2장에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갱생 보호의 각 단계에서 절도 사범의 동향 등을 분석·소개하고, 절도 사범의 증가와 감소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검찰, 교정·갱생 보호 등의 각 단계에서 절도사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각종 활동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특별 조사의 결과의 개요를 소개 한 후, 2006년 절도죄에 도입된 벌금형의 운용 상황 등을 밝히고, 특별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기록이 없는 절도사범들 및 범죄 기록이 없는 침입절도사범의 실태와 그 재범상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절도사범의 재범방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참고로 최근 『범죄백서』의 연도별 특집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5-2〉 연도별 특집주제 목록(2004~2014년)

연도	특집주제
2004	변모하는 흉악 범죄와 그 대책
2005	소년 비행
2006	형사 정책의 새로운 조류
2007	재범의 실태와 대책
2008	노인 범죄의 실태와 처우
2009	재범 방지 시책의 충실
2010	중대 사범의 실태와 처우
2011	소년·청년 범죄자의 실태와 재범 방지
2012	형무소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
2013	여자의 범죄·비행 세계화와 형사 정책
2014	절도사범과 재범

* 연도는 『범죄백서』 발간연도임

제2절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

1. 『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Australian crime: facts and figures)』 개관

호주에서는 범죄백서(White Paper on Crime)라는 명칭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지는 않고, 국책연구소인 '호주범죄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IC)'에서 매년『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라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호주 범죄: 실태』는 연방국가인 호주에 있어 범죄에 대해 전국 자료를 분석한 통계자료이다.『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에 이용되는 통계자료는 호주 통계청과 경찰청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데이터베이스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 두 유형의 정보를 통해 범죄의 발생과 범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통계는 형사사법절차의 단계에 따라 구체화되어 있다. 경찰은 인지사건,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종국처분, 교정기관에서는 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각 형사사법기관별 비교가능성과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기록으로부터 보고된 전국적인 범죄기록은 1996년 이후, 교정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수형자에 대한 자료는 1983년 이후, 모든 형사법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2001년 이후, 그리고 범죄자 데이터는 2009년 이후에 수집되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측정단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법원은 개개 사건수준에서 기록하며, 교정기관에서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연방국가인 호주에서는 각 지방자치주별로 법, 정의, 데이터수집 방법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데이터의 수집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하는 자료가 있는 반면 회계연도(7월부터 6월까지)별로 수집하는 자료도 있다는 것이다.

2. 2013년『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의 편집체계

2013년『호주의 범죄 : 구체적 실태』의 편제는 (경찰집계)범죄, 범죄의 특성, 범죄피해, 범죄자 특성, 형사법원, 교정, 형사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3〉『호주 범죄: 실태』체계와 구성

장	절
제1장 범죄의 일반적 동향	제1절 범죄피해자의 수
	제2절 범죄피해율
	제3절 범죄발생 장소
제2장 각종 범죄의 특성	제1절 살인
	제2절 폭행
	제3절 성범죄
	제4절 강도
	제5절 고의적인 무단 침입
	제6절 자동차절도
	제7절 기타 절도
	제8절 사기 및 위조 관련 범죄
	제9절 약물범죄
제3장 범죄피해	제1절 가구 및 개인피해
	제2절 형사정책시스템에 대한 인식
	제3절 사기
제4장 범죄자 특징	제1절 범죄자
	제2절 범죄자 약물
	제3절 경찰서 유치인의 특징
	제4절 가장 심각한 범죄
제5장 형사법원	제1절 형사법원 처리절차
	제2절 법원의 선고
	제3절 양형
제6장 교정	제1절 교정시설
	제2절 지역사회 교정
	제3절 소년원
제7장 형사사법기관	제1절 사법 비용
	제2절 경찰
	제1절 법원 행정
	제2절 성인 교정시설 서비스

제1장 "(경찰집계)범죄[42]"편[43]에서는 먼저 주요 폭력범죄의 피해자 수와 주요

42) 보고서에는 피해자와 범죄자에 대한 경찰 정보가 법원에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살인'으로 범죄를 기록했다하더라도 나중에 '과실치사'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43) 1장의 주요 자료 출처는 호주 통계청의 (경찰집계) 범죄피해자(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1997.2012. Recorded crime victims, Australia (various issues; title varies). ABS cat. no.

재산범죄의 피해자 수를 분석하였다. 주요 폭력범죄는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납치·유괴를 다룬다. 강도는 폭력의 사용이나 협박이 재산범죄보다 심각하므로 폭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재산범죄는 고의적인 무단침입, 자동차절도 및 기타 절도로 구분하여 피해자 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범죄피해율 역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발생장소를 분석하였다. 범죄발생 장소 역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구분하여 호주 통계청 범죄 장소 분류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주거지역, 지역공동체, 기타)별 피해자 수 및 구성비를 분석하였다.

제2장 "각종 범죄의 특성"편[44]에서는 살인, 폭행, 성범죄, 강도, 고의적인 무단침입, 자동차절도, 기타 절도, 사기 및 위조 관련 범죄, 약물범죄 등을 선정하여 범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범죄에 대해 호주 통계청에서 내린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장소, 피해자, 추이, 무기사용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살인에는 과실치사는 포함되나, 살인미수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폭행범죄에 있어서는 호주 통계청에서 폭행피해자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45] 몇몇 주로부터는 데이터를 받지 않아 분석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3장 "범죄피해"편[46]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

4510.0. Canberra: 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1996.2013). 호주 통계청의 '사회인구학적 통계'(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various issues). ABS cat. no. 3101.0. Canberra: ABS) 등이다.

44) 2장의 주요 자료 출처는 호주 통계청의 '범죄와 피해자'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1997.2012. Recorded crime victims, Australia (various issues; title varies). ABS cat. no. 4510.0. Canberra: ABS) '사회인구학적 통계'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1996.2013.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various issues). ABS cat. no. 3101.0. Canberra: ABS), 자동차센서스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13. Motor vehicle census, Australia. ABS cat. no. 9309.0. Canberra: ABS), 전국자동차절도감소협의회의 '자동차절도연구시스템 연간통계보고서'(National Motor Vehicle Theft Reduction Council (NMVTRC) 2013. Comprehensive Auto Theft Research System (CARS) annual statistical report 2011/12. Adelaide: CARS. http://ncars.on.net/), 호주비용정보교환기관의 '비용사기보고서'(Australian Payments Clearing House (APCH) 2013. Payments fraud in Australia. Media release 6 June. http://apca.com.au/docs/ 2013-media -releases /payments-fraud- statistics-for-calendar-year-2012.pdf), 연방대검찰청의 '연례보고서'(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CDPP) 2012. Annual report 2011.2012. Canberra: CDPP), 호주범죄위원회의 '불법약물자료보고서'(Australian Crime Commission (ACC) 2002.2012. Illicit drug data report (various issues, title varies). Canberra: ACC. 2002 report released by the Australian Bureau of Crime Intelligence) 등이다.

45) 그 이유는 주정부 및 지역간에 정책, 절차, 시스템, 기록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호주 통계청은 2011년에 폭행정보 수집 방식을 개선하여 폭행데이타는 불완전하다.

46) 3장의 주요 자료 출처는 호주 통계청의 '범죄피해조사'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11.12. Crime victimisation, Australia (various issues). ABS cat. no. 4530.0 Canberra: ABS), 호주경쟁 및 소비자위원회의 '사기에 대한 보고서'(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다. 2009년 이전에는 '전국 범죄와 안전 조사(National Crime and Safety Survey)'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으나, 2010년부터 호주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호주 범죄피해(Crime Victimization, Australia)'의 데이터를 활용한다[47]. 따라서 2010년 이전의 자료와 이후의 자료를 비교할 수는 없다. "범죄피해"편에서는 먼저 가구피해(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자동차절도, 자동차에서의 절도, 손괴, 기타 절도)와 개인피해(폭행, 강도, 성폭력)를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의 사기에 대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 "범죄자 특성"편[48]에서는 범죄자의 성과 연령에 따라 범죄자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그 이유를 어느 연령층에서 범죄율이 정점을 찍는지, 남자범죄자와 여자범죄자의 연령과 범죄패턴이 상이한지, 여자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기술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자료는 살인 및 관련 범죄(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영아살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폭행, 성폭력, 강도, 고의적인 무단침입, 자동차절도, 기타 절도, 사기 및 기만 관련 범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호주 약물사용감시프로그램(Drug use monitoring in Australia Program)'으로부터 뽑은 출간되지 않는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detainee)의 약물 사용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the most serious offence; MSO)를 분석하였다.

제5장 "형사법원"편[49]에서는 먼저 형사법원의 위계를 소개하고, 형사법원의 처

Commission(ACCC) 2013. Targeting scams: Report of the ACCC on scam activity 2012. Canberra: ACCC) 등이다.

47) 범죄피해조사는 다목적 가구조사(Multipurpose Household Survey; MPHS)의 일부로 수행되며, MPHS는 월간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LFS)의 추가 조사이다. 범죄피해조사는 15세 이상(성폭력사건은 18세 이상)에 대해 실시하며, 선정된 가구에서 무선적으로 1명만 조사한다.

48) 4장의 주요 자료 출처는 호주 통계청의 '(경찰집계) 범죄와 범죄자'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09.2012. Recorded crime. offenders (various issues). ABS cat. no. 4519.0. Canberra: ABS), 호주범죄학연구소의 약물사용모니터링자료(Extract from unpublished data from AIC's Drug use monitoring in Australia Program), 그리고 호주 통계청의 '사회인구학적 통계'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1996.2013.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various issues). ABS cat. no. 3101.0. Canberra: ABS) 이다.

49) 5장의 주요 자료 출처는 연방/주정부 서비스제공 운영위원회의 '정부서비스 보고서'(Steering

리 과정에서의 각 법원별 종국처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법원에서 유죄판결의 비율과 양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6장 "교정"편[50]에서는 교정시설 구금, 지역사회 교정 및 소년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형자에 대한 자료는 매년 6월 30일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센서스를 실시하여 수집한다. 소년원 수감자에 대한 정보는 호주 범죄학연구소에서 1981년 이후 매년 각 분기의 마지막 날,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오다가 2010년에 '호주 건강과 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로 책임을 이관하였다. 장기 추이 통계는 매년 6월 30일에 수행된 소년원 센서스자료에 기초하였다.

제7장 "형사사법기관"편[51]에서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 따라 사법에 대한 전체 비용, 경찰활동, 법원 행정 및 성인 교정시설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였다.

Committee for the Review of Commonwealth/State Service Provision(SCRCSP) 2013.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volume 1: Education, justice emergency management. Melbourne: Productivity Commission), 호주 통계청의 '형사법원' 보고서(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2013. Criminal courts, Australia 2011.12. ABS cat. no. 4513.0. Canberra: ABS), 호주 통계청의 '연방 피고'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2013. Federal defendants, selected states and territories 2011.12. ABS cat. no. 4515.0. Canberra: ABS), 및 호주 통계청의 '사회인구적 통계'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1996.2013.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various issues). ABS cat. no. 3101.0. Canberra: ABS) 등이다.

50) 6장의 주요 자료 출처는 연방/주정부 서비스제공 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정부서비스 보고서'(Steering Committee for the Review of Commonwealth/State Service Provision(SCRCSP) 2013.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volume 1: Education, justice emergency management. Melbourne: Productivity Commission), 호주 범죄학연구소의 호주의 '수형자'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1996.2013.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various issues). ABS cat. no. 3101.0. Canberra: ABS), 호주 통계청의 '교정서비스' 보고서(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02.2013. Corrective services, Australia(various issues, title varies). ABS cat. no. 4512.0. Canberra: ABS), 호주 건강과 복지연구소의 '소년수감인구' 자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2012. Juvenile detention population in Australia 2012. Juvenile justice series no. 11. cat. no. JUV 11. Canberra: AIHW), 및 호주 통계청의 '사회인구적 통계'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1996.2013.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various issues). ABS cat. no. 3101.0. Canberra: ABS) 이다. 등이다.

51) 7장의 주요 자료 출처는 연방/주 서비스 제공의 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정부 서비스 보고서 (Steering Committee for the Review of Commonwealth/State Service Provision(SCRCSP) 2013.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volume 1: Education, justice emergency management. Melbourne: Productivity Commission), 및 호주 통계청의 '사회인구적 통계' 자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1982.2013. Prisoners in Australia(various issues, title varies). ABS cat. no. 4517.0. Canberra: ABS. 1982.1993 published by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등이다.

제3절 독일에서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in Germany)

1. 『독일에서의 형사사법』 개관

독일에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범죄백서(White Paper on Crime)라는 명칭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지는 않고, 경찰단계에서 검찰, 양형(법원), 형의 집행(교정, 보호관찰)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 포괄해서 다룬 보고서는 1997년에 처음으로『독일에서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in Germany)』이라는 명칭으로 발간된 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이 보고서는 1997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9년에 발간되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매번 괴팅겐대학의 Jehle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다.

독일에서의 범죄통계는 주로 경찰단계에서의 통계인 '경찰범죄통계(Police Crime Statistics-Federal Republic of Germany)'를 활용할 뿐,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및 재범까지 포괄해서 다룬 백서는 매년 발간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정기적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을 포괄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이 보고서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형사사법단계별(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로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수집일이 상이하다는 점과 통계수집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경찰은 법뿐만 아니라 경찰의 필요에 의해 범죄를 분류하고, 검찰과 법원은 사례만(어느 정도는 사람) 기록하나,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는 사람만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2009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2009년 『독일에서의 형사사법』의 편집체계

2009년 『독일에서의 형사사법』의 편제는 경찰수준에서의 범죄와 용의자, 기소, 양형 및 형사 제재, 보호관찰, 교정기관, 재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4〉『독일에서의 형사사법』체계와 구성

장	절
제1장 범죄와 검거 - 경찰수준	제1절 경찰집계 사건
	제2절 검거율
	제3절 피의자
제2장 기소	제1절 검찰청에서의 처리결과
	제2절 구금
제3장 양형 및 형사 제재	제1절 법원의 처리절차
	제2절 범죄유형별 형량
	제3절 성인의 양형
	제4절 소년형법하의 제재
	제5절 특집: 가해자-피해자 조정
제4장 보호관찰	
제5장 교정기관	제1절 복역 특징
	제2절 수형자 연령
	제3절 잔여 구금기간
제6장 재범	

"경찰수준에서의 범죄와 피의자"편[52]에서는 1953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는 연방경찰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의 『경찰범죄통계(Police Crime Statistice-Federal Republic of Germany)』 자료를 활용한다. 주로 경찰청에서 다루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되 세관에서 통제하는 마약범죄는 포함하고, 세금관련 범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 교통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요 범죄는 살인, 성범죄, 상해, 강도, 자동차운전자 폭행, 절도, 사기, 마약 등이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 발생율(frequency rate; 10만 명당 범죄건수), 사건해결율(cleared-up rate; 경찰수사를 통해 현행범으로 검거되거나 적어도 피의자의 이름을 알게 된 불법행위 사건의 비율) 그리고 피의자(suspect, 성별, 연령별, 외국인), 피의자율(suspect rate, 8세 미만을 제외하고 해당 인구집단 10만 명당 피의자 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소"편[53]에서는 검찰청에서의 처리과정을 소개한 후 처리결과 및 구류처분사유, 구류류처분기간 등을 다루고 있다.

"양형 및 형사 제재" 편[54]에서는 재판 과정에 대해 소개한 후, 형사사건의 처리

52) 주요 자료 출처는 연방형사경찰국의 '경찰범죄통계' 이다.
53) 주요 자료 출처는 검찰통계, 연방통계국 '유죄판결통계(conviction statistics)' 등이다.

건수 및 처리유형, 1963년에서 2006년까지의 영향의 추이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성인과 소년범을 구분하여 성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유형과 상대적 빈도, 소년형법에 의한 제재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별 주제로써 피의자-피해자 조정을 다루고 있다.

"보호관찰" 편[55]에서는 보호관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성인과 소년범을 구분하여 보호관찰 인원 및 처분사유, 보호관찰 종료 사유 등을 다루고 있다.

"교정기관"편[56]에서는 구금기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구금시설의 실태와 수형자인원, 구금사유, 구금사유별 연말의 수형자 수의 추이, 연령별 수형자, 소년 구금시설의 수용자 수, 잔여 구금기간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범"편[57]에서는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형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기술한 후, 중앙연방범죄경력 자료를 이용하여 제재별, 범죄유형별, 연령별, 성별 재범율을 분석하고 있다.

제4절 소결

본 절에서는 일본, 호주 및 독일의 범죄백서 형식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먼저 매년 범죄백서 형식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집계한 통계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도 제시한다는 점이다. 한 사회나 국가의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통계로서 경찰이 집계한 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hidden crimes)까지 포함된 모든 범죄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4년에 한 번씩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범죄백서에 포함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자수가

54) 주요 자료 출처는 유죄판결통계, '독일에서의 가해자-피해자 중재' 자료(Kerner/Hartmann(2007), Täter-Oper-Ausgleich in Deutschland, Berlin).
55) 주요 자료 출처는 연방통계국의 '보호관찰 서비스 통계'
56) 주요 자료 출처는 연방통계국의 '교정통계'
57) 주요 자료 출처는 Jehle/Heinz/Sutterer(2003). Legalbewährung nach strafrechtlichen Sanktionen, Berlin, p. 33.

4,000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백서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재범관련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재범에 대해 검거, 검찰·재판, 교정, 보호관찰 및 재비행·재범소년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 각각의 단계별로 재범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 재범의 방지를 형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재범통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셋째, 범죄백서에 통계를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범죄백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주로 활용하되 『검찰연감』, 『사법연감』,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국제형사과 내부 통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기는 하나 이들 자료들은 모두 행정통계들이며, 설문조사자료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平成26년(2014년)판 『범죄백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중대사법의 실태와 재범 등을 조사하여 재범방지대책을 도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특이하게도 매년 6월 30일에 성인과 소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센서스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넷째, 발간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일본 『범죄백서』는 7월말 기준으로 범죄관련 통계를 처리하여 11월 10일경에는 각료회의를 거쳐 발간하고 있다. 호주와 독일의 경우에는 발간시기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범죄백서』의 경우 2012년에 대한 범죄통계가 2014년 3월에 발간되었다. 현재에는 『범죄백서』 발간을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 11월경에 발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나 『범죄분석』의 기초자료인 경찰청의 『범죄통계』가 8월에 발간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서두른다면 당해 연도에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각 기관이 책자가 발간되기 전이라도 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관련 데이터만이라도 미리 전달한다면 발간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발간주체를 연구기관으로 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법무성 하에 있는 법무총합연구소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있고, 호주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호주범죄학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범죄백서 형식의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지는 않지만 발간주체는 괴팅겐대

학의 교수의 책임 하에 발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범죄통계 자료집인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영국의 『Crime in England and Wales』라는 보고서와는 달리 분석보다는 집계된 통계표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범죄백서』는 법무부 산하의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분석보다는 통계를 단순히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발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제6장

개선방안

제6장

개선방안

『범죄백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생산되는 범죄와 형사사법 관련 자료들을 한 곳에 취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추이와 인구변화 등 몇 가지 사회적 지표들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통계표만을 나열하고 있는 다른 범죄관련 발간물에 비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백서』가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가, 더 나아가 형사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와 같은 회의적인 평가는 기본적으로 『범죄백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자료들이 갖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은 장기간의 개선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 내에 『범죄백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행 『범죄백서』의 편집체계와 내용구성, 사용된 통계자료 형식의 적절성, 이용자의 편의성, 자료수집, 편집, 분석, 발간과정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편집체계와 내용구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범죄백서』의 편, 장, 절과 절의 하위항목 상의 편집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1절 편집체계 및 내용구성 개편안

1. 편집체계의 개편

가. 범죄피해자 편 신설

범죄피해자 편의 신설은 최근 형사정책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범죄피해조사가 2009년부터 실시됨으로써 공식적인 범죄통계를 보충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편에서는 기존에 여러 편에서 분산되어서 다루어진 범죄피해의 실태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을 통합하고, 범죄피해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피해율, 신고율, 신고되지 않은 이유, 범죄피해실태, 범죄피해취약성요인 등을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틀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나. 소년범죄의 동향 및 소년 범죄자 처우 편의 신설

소년범죄의 동향 및 처우편을 신설함으로써 성인과는 상이한 처리절차 및 처우형태를 갖는 소년범죄의 동향과 처우를 한 곳에 제시함으로써 몇 명의 소년 범죄자들이 검거되어 이 중 몇 명이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며(전체 소년 범죄자 중 촉법소년의 수가 얼마나 되며), 몇 명은 검찰로 송치되어 몇 명이 기소유예처분으로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가 중단되어 다이버전되며, 몇 명이 형사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교도소에 입소하게 되는지, 몇 명이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어 이 중 몇 명이 시설내 처우를 받고, 몇 명이 사회내 처우를 받는지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년 범죄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다소 미약하게 제시되었던 보호관찰분야에 대해 여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되도록 구성하였다.

다. 재범 장의 신설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생산목적은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형사사법활동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를 수집하여 가공하여 발간되는 『범죄백서』도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법기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재범률에 관련된 내용이 『범죄백서』에 대폭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편 "범죄자의 처우"편에 재범에 관련된 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5장 '재범'의 장에서는 먼저 경력범죄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형사사법자원들의 양과 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후향적인 방식의 재범통계인 입건된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 보호관찰대상자 중 보호관찰경력자 비율, 교도소 입소 인원 중 재입소자의 비율, 소년원 입소 인원 중 재입원자의 비율 등을 다루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이나 교정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전향적 방식의 재범통계인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율, 재입원율, 재복역률 등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라. 범죄자처우에서 민간의 참여 장의 신설

형사사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예방활동에서부터 검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에 대한 지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편 "범죄자의 처우" 부분에 제4장 '민간의 참여'를 신설하였다.

제4장 민간의 참여를 신설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범죄자처우와 관련된 모든 민간부문의 활동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각 형사사법기관에 각 업무영역별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규모, 구체적인 활동상황, 참여자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법무연수원에서 취합하여 독립된 편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범죄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백서』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흉악)'의 동향과 처리에 대한 통계자료는 충실히 제공하고 있으나 폭력범죄의 동향과 처리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제1편 "범죄 동향편"과 제2편 "범죄의 처리편"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바.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 항목 추가

범죄의 발생동향에서 범죄의 양과 심각성뿐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의 유형은 무엇이며, 그들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또한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기존의 『범죄백서』에서는 특정 범죄자를 소년 범죄자, 여성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외국인범죄자로 구분하고, 각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유형, 범죄행위의 특성, 검찰에서의 처리현황, 교정시설에서 처우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과연 노인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노인범죄자가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엇인가,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교정처우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범죄백서』 개편안에 노인범죄자의 동향과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6-1〉 2014년『범죄백서』편집체계 개편안

편	장	절	
제1편 범죄의 동향	제1장 범죄의 일반적 동향	제1절 전체범죄	
		제2절 형법범	1. 재산범죄
			2. 강력범죄(흉악)
			3. 강력범죄(폭력)(신설)
		제3절 특별법범	1. 교통범죄
			2. 보건범죄
			3. 환경범죄
			4. 마약류범죄
			5. 경제범죄
			6. 지식재산권범죄
			7. 컴퓨터범죄
			8. 선거범죄
		제4절 외국과의 비교	
	제2장 주요 범죄유형별 범행 및 범죄자의 특성	제1절 재산범죄	1. 범행수법별 유형
			2. 범죄자의 특징
		제2절 강력범죄(흉악)	1. 범죄행위의 특징
			2. 범죄자의 특징
		제3절 강력범죄(폭력)(신설)	1. 범죄행위의 특징
			2. 범죄자의 특징
		제4절 마약류범죄	1. 범죄행위의 특징
			2. 범죄자의 특징
	제3장 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	제1절 여성범죄자	1. 발생
			2. 범죄자의 특징
		제2절 공무원범죄자	
		제3절 정신장애범죄자	
		제4절 외국인범죄자	1. 외국인 입국자 현황
			2. 등록외국인 현황
			3.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4. 범죄동향
			5. 출입국사범 유형별 처리현황
		제5절 노인범죄자	1. 노인인구의 현황
			2. 범죄동향
			3. 범죄자 특성
	제4장 국민의 국외 범죄와 피해	제1절 국민의 출국과 해외체류 현황	1. 국민의 출국현황
			2. 국민의 해외체류 현황
		제2절 국민의 국외 범죄	
		제3절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제4절 국제형사사법공조	
제2편 범죄의 처리	제1장 개관		
	제2장 검찰	제2절 처리현황	1. 개설

편	장	절	
			2. 기소
			3. 불기소 등
			4. 감호청구 및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명령 청구
			5. 구속현황
		제3절 각종 범죄의 처리현황	1. 재산범죄
			2. 강력범죄(흉악)
			3. 강력범죄(폭력)(신설)
			4. 교통범죄
			5. 보건범죄
			6. 환경범죄
			7. 마약류범죄
			8. 경제범죄
			9. 지식재산권범죄
			10. 컴퓨터범죄
			11. 선거범죄
		제4절 범죄자 유형별 처리현황	1. 여성범죄자
			2. 공무원범죄자
			3. 정신장애범죄자
			4. 외국인범죄자
			5. 노인범죄자
	제3장 법원	제1절 개설	
		제2절 공판사건	1. 접수현황
			2. 처리현황
			3. 심급별 과형현황
			4. 국민참여재판
		제3절 약식명령사건	
		제4절 즉결심판사건	
제3편 범죄자 처우	제1장 교정	제1절 수용현황	1. 수용자 수용현황
			2. 수용자의 특성
		제2절 수형자의 처우	1. 분류처우제도
			2. 급여 및 의료
			3. 교정교화프로그램
			4.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5. 사회적 처우
			6. 처우불복제도
		제3절 여성·외국인 수형자의 처우	1. 여성 수형자의 처우
			2.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
		제4절 피감호자의 처우	1. 개설
			2.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3. 피치료감호자의 처우
		제5절 미결수용자 등에	1. 미결수용자의 처우

편	장	절	
		대한 처우	2. 사형확정자의 처우
			3. 노역장 유치자의 처우
			4. 감치에 처해진 자의 처우
		제6절 가석방·가출소·가퇴원	1. 수형자의 가석방
			2.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와 집행면제
			3. 피보호감호자의 가종료·종료
		제7절 갱생보호	1. 개설
			2. 담당기구
			3. 갱생보호방법
			4. 갱생보호실적
	제2장 보호관찰	제1절 보호관찰	1. 보호관찰 실시 현황
			2.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3. 보호관찰 제재조치 현황
			4. 보호관찰 종료사유 현황
		제2절 사회봉사·수강명령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현황
			2.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분야별 현황
			3.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 중 준수사항위반자 조치 현황
		제3절 전자감독(신설)	1.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2.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성
			3.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현황
		제4절 조사	1. 조사의 유형 및 조사 현황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3장 사면	제1절 개설	
		제2절 사면내역	
	제4장 민간의 참여	제1절 범죄예방위원	
		제2절 교정위원	
		제3절 소년원에서의 민간참여	
	제5장 재범(신설)	제1절 전과자비율	
		제2절 교도소 재복역율	
		제3절 보호관찰 재범율	
		제4절 소년원 재입원자비율	
제4편 소년범죄의 발생동향과 처우(신설)	제1장 소년범죄의 발생동향	제1절 형법범	1. 형법범 발생동향
			2. 소년형법범죄유형별 발생동향
			3. 소년형법범죄자의 연령층별 동향
		제2절 특별법범	1. 특별법범 발생동향
			2. 소년특별법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3. 소년특별법범죄자의 연령층별 동향
		제3절 주요 소년범죄의 동향	1. 강력범죄(흉악)
			2. 강력범죄(폭력)
			3. 재산범죄

편	장	절	
			4. 교통범죄
		제4절 소년범죄자의 특성	1. 가정환경
			2. 학력
			3. 전과
			4. 여자소년범
	제2장 소년범죄자의 처리	제2절 검찰의 소년범죄자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제3절 법원의 소년범죄자 처리현황	1. 소년보호사건
			2. 소년형사사건
	제3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제1절 개설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	1. 개설
			2. 소년분류심사 대상자 현황
			3. 분류심사의 과학화전문화
			4. 비행원인진단 기능 강화
		제3절 소년보호관찰	1. 보호관찰 현황
			2. 사회봉사·수강명령 현황
		제4절 소년원	1. 개설
			2. 소년원 수용인원 현황
			3. 보호소년의 특성
			4. 분류처우 및 수용보호
			5. 교육과정 및 내용
			6. 출원
		제5절 소년교도소	1. 소년수형자의 현황
			2. 소년수형자의 특성
			3. 소년수형자의 처우
			4. 소년수형자의 출소
		제6절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1. 운영현황
			2. 운영실적
제5편 범죄피해자 (신설)	제1장 범죄피해율과 신고율	제1절 범죄피해율	
		제2절 신고율과 미신고 이유	
	제2장 범죄피해자의 현황(신설)	제1절 전체범죄	
		제2절 강력범죄(흉악)	
		제3절 강력범죄(폭력)	
		제4절 재산범죄	
	제3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1절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제2절 손실복구지원	
		제3절 사생활보호 및 신변안전	
		제4절 형사조정제도	
		제5절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	

2. 하위영역의 연계성 강화

현행 『범죄백서』의 편, 장, 절의 제목과 하위영역에 포함된 내용 간에 연계성이 낮은 부분들이 있다. 상위영역과 이에 포함되는 하위영역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 범죄자유형별 범죄동향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형사법공조에 대한 내용은 제4장 '국민의 국외범죄와 피해'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한다.

둘째, 제2편 "범죄의 처리" 중 검찰의 범죄 처리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전력별 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3편 "범죄자의 처우"에 신설된 제5장 '재범'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한다.

셋째,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2장 '보호관찰'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석방·가출소·가종료자에 대한 내용은 제1장 '교정'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한다.

넷째,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2장 '보호관찰'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1장 '교정'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한다.

다섯째, 제3편 "범죄자의 처우" 제3장 '소년보호'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관한 내용은 제3절 청소년비행센터로 구성한다.

3. 추가 및 삭제 항목

가. 추가 항목

첫째, 보호관찰 업무영역별 현황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20여 년간 보호관찰은 양적·질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하였다. 사회내 처우의 확대로 대상자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에서 관할하는 업무영역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범죄백서』에서는 보호관찰업무영역의 확대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해에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 중 협의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존스쿨, 전자감독,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 형집행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요약한 총괄적인

통계자료를 보여주고, 전자감독, 존스쿨,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보호관찰현황에 대한 내용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소년보호관찰의 경우에도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 총괄현황표와 함께 협의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대상자의 특성, 죄명, 준수사항위반현황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소년보호담당직원 관련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형사사법 업무영역별로 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활동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담당직원에 관한 통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처우부분에서 처우현황과 더불어 처우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삭제 항목

현재 『범죄백서』에는 일반인들에게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질적인 기술, 매년 변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제시, 내용의 중복, 도표와 표의 중복제시 등으로 분량이 많아져 필요로 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삭제할 것들을 제안한다.

첫째, 범죄자 처우(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현황, 연혁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교정처우분야에서 경비처우급별 판정기준이나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과 같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범죄백서』에 수록된 통계표들의 일부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표는 표로 제시하는 것보다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돕거나 복잡한 표의 내용 중 연도별 추세와 같이 특정 내용의 추세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활용된다. 앞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표와 표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없으나 『범죄백서』에는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견되어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므로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통계자료의 적절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1. 통계자료 내용 및 표시의 수정

통계자료에서 사용된 용어나 지표 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발생건수는 '인지건수'로, 인구비는 '범죄율'로, 강간(성폭력)은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둘째, 범죄율은 연도별, 범죄유형별 비교나 외국의 범죄발생추세와의 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지표이므로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표에서는 반드시 범죄율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범죄분석』에서 형법범죄란 형법각칙의 범죄와 더불어 특별법상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범죄백서』의 일러두기와 통계표 주에서 형법범죄에 대한 정의를 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넷째, 통계표에서 단위가 누락된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단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단위가 잘못 표기된 통계표를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표의 번호와 제목은 표 위의 왼쪽 끝으로 정렬하고,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의 가운데로 정렬하는 것으로 수정해야한다.

여섯째, 외국과의 범죄발생현황 비교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전체범죄가 아닌 형법범죄의 발생건수와 범죄율을 기준으로 비교해야한다.

2. 통계표 형식의 통일

『범죄백서』에 포함된 통계표 형식을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체계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첫째,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표에서 전체 범죄발생추세(30년)를 제외한 모든 통계표는 기간설정을 10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세자료에서 증감율 계산은 기준년도의 수치를 100으로 한 기준년도대비 증감율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셋째, 2×2 표 형식을 갖는 통계표에서 구성비를 일관성있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가. 일러두기 내용보강/용어해설집 제작

일러두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강하거나 용어해설집을 부록으로 별도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범죄백서』에서 사용한 용어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범죄유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죄명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일반인 이용자를 고려하여,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용어(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본안사건, 재기수사명령사건, 선도위탁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재범률, 전과, 재범 등과 같은 재범관련 용어에 대해 재범률 산정방식, 전향적 재범통계인 경우 재범산정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추적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나. 자료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공

『범죄백서』를 접한 이용자들이 『범죄백서』에서 사용된 원자료들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나 별도의 자료를 구하고자 할 때 쉽게 자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범위, 적용기준, 작성항목, 작성주기, 자료수집방법 및 체계 등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백서』에 사용한 통계나 용어에 대한 문의나 추가 자료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법무연수원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문의처의 전

화번호 등을 『범죄백서』의 일러두기나 책자의 맨 뒷장에 제공해야 한다.

제3절 형사사법통계의 수집·분석·발간 과정의 개선

1.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통한 원자료의 수집

『범죄백서』의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각 기관이 발간한 책자를 엑셀데이터 형식으로 수집하여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 생산한 원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형사사법절차상의 여러 기관(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들을 서로 연계하여 통계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가칭 '국가범죄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원자료를 데이터파일형태로 수신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들은 항목에 따라 수기통계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입력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데이터 입력서식에 따라 주요 업무활동을 컴퓨터에 입력·저장하고 있으며, 형사사법통합전산망(KICS)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형사사법 통계정보의 공유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백서』를 발간하는 주무부서인 법무연수원에서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범죄백서』에서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계항목을 설정해 놓고, 관련 항목들이 자동으로 "범죄백서분석통계시스템(가칭)"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자료편집 및 분석의 전문화

이러한 방식으로 각 형사사법기관이 생산한 원자료를 수집한 이후에는 통계자료의 편집 및 점검과정이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에 각 부서의 통계작성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통계기관이 없어 죄명분류방식, 분석단위, 집계기준 등이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의 편

집 및 점검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원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만들어 자료를 편집해야한다. 특히, 각 부서의 자료를 동일한 범죄분류체계에 따라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범죄백서』의 작성을 위한 범죄분류항목의 편집과정에서 김은경 외(2010)가 2010년 각 실무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논의를 거쳐 제안한 범죄분류체계코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범죄분류체계를 만들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이 통계를 수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집한 통계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자료수집, 편집, 그리고 분석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연수원내에 『범죄백서』 발간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담부서에서는 매년 『범죄백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계항목 이외에 새로운 범죄현상이나 형사정책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통계항목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범죄백서분석통계시스템에 반영하고,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분류체계의 적용과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통해서 편집 검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업데이트하며, 단년도 자료 및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서 『범죄백서』발간에 필요한 통계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법무연수원에서 파견받은 일선 수사관이 『범죄백서』 발간업무를 담당할 것이 아니라 통계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통계전문인력이란 단순히 통계학을 전공한 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과학 전공자를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및 발간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범죄백서』 발간작업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이 전담부서에서 『범죄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자료편집과 검토·분석·발간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지

식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통계항목의 설정, 적용될 개념과 정의의 개발, 자료수집 및 편집, 분석의 계획과 수행, 결과물을 준비하는 등의 과정에 범죄, 피해자, 형사정책 등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은 자료가 적절하게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2013년 법무연수원의 편집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3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공동편집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범죄백서』 발간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에는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법무연수원에 파견된 사무관급의 직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각 부서의 부서장 혹은 각 분야 전문 연구원으로 공동편집위원회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업무의 범위도 발간물의 편집 및 집필에서 원자료의 수집, 관리, 편집, 분석과정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속적인 작업의 최종 결과물인 『범죄백서』를 출간과 배포하기 전에 외부전문가에게 검수를 의뢰하여 편집체계의 적절성과 기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해한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자료

강은영·권수진·원혜욱·김상미, 2014,『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지현, 2012,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립, 관리 및 활용사례",『경찰 공식 범죄통계활용도 제고방안』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지현·김지선·김한균·박형민·안성훈·이원상·최수형·홍영오,『경찰「범죄통계」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은배·이기준·이미라·임현정·김동훈, 2011,『교육분야 통계 수집·관리·활용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범죄통계』.

김덕재, 2004,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개선방안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저스티스』제82호.

김은경, 2008,『국가범죄통계관리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김은경·박정선·정병하·탁종연·황정인, 2009,『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법무연수원.

김지선·안성훈·박성훈·윤옥경·원혜욱·노성훈, 2014,『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노성훈, 2013, "자료공개를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방안",『한국 범죄통계의 현재와 미래』, 범죄통계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

대검찰청, 2013,『범죄분석』.

박정선, 2008,『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조윤오, 2014,『재범방지를 위한 고정보호의 선진화방연구(II): 교정민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09,『아동청소년백서』.

윤옥경·박정선·최순종, 2010a,『보호관찰통계연보 정책활용도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한 보호관찰통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윤옥경·박정선·최순종, 2010b,『교정통계연보 정책활용도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한 보호관찰통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이민식·황의갑, 2010,『소년보호 통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소년보호통계」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법무연수원, 2013,『범죄백서』.

장준오·노용준·유홍준·이완수·정태인, 2008,『노인범죄와 범죄피해 및 노인환경의 유해성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종연·전영실·이희길·심수진, 2008,『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통계청.

황지태, 2013, "범죄통계 무엇이 문제인가?",『한국 범죄통계의 현재와 미래』, 범죄통계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

홍영오·김한균, 2012.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활용방안",『공식 범죄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세미나 자료집.

2. 국외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4,『Australian crime: Facts & figur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Crime in England and Wales』.

Jehle, J.-M., 2009,『Criminal Justice in Germany』, Fifth Edition 2009.

UN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03,『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New York : United Nations Publication.

法務總合研究所, 2012, 平成24年版 犯罪白書.

_____, 2014, 平成26年版 犯罪白書.

Abstract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utilization of 『White paper on crime』 in Korea

Kim, Jisun* and Hong, Young-Oh**

In order to deal effectively with crime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related to the crime and criminals over the long term, to analysis in-depth of characteristics and trends, and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crime.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since 1984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have been published 『White paper on crimes』.

Despite of the importance and high utilization of 『White paper on crime』, it has the problem of the reliability, accuracy, and validity because it used the raw data collected in each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out the review and editing process as well as does not provide adequate statistics that can be put into policy decisions because it simply lists the data collected in each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out in depth analysis and connecting other important social index. And because it does no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data collection methods, calculation methods,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the metrics, the risk that the statistics may be incorrectly utilized by the users is very hig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a restructuring plan of 『White paper on crime』. To this purpose, the editing system and the specific content of each sub-system, statistical data form and contents, easiness of users, collection and

* Senior Research Fellow, in KIC.
** Research Fellow, in KIC.

analysis of data and publication process of 『White paper on crime』 was reviewed in depth and the editing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related crime in Japan, Australia, and Germany is examined.

Analysis of reform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reflect recent trends in crime and criminal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section and chapter in 『White paper on crime』. 1) a crime victim, 2)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offenders treatment trends, and 3)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4) trends in violent crime and the treatment, and 5) trends of elderly offenders and treatment.

Second, 『White paper on crime』 must be added the following information 1) business area-specific status of probation, juvenile protection personnel-related statistics, and 3) performance indicators about treatment of the correction. And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following: 1) the facilities and history of the institution charge of the treatment of criminal, 2) too professional content, 2) statistical tables showing duplicate the same information.

In text and statistical tables use appropriate and universal terms, and terms used in the statistical tables provide a clear definition of the term in explanatory notes or footnote.

Fourth, the statistical tables related crime occurrence makes sure to present the crime rate (number per 100,000 population occurred).

Fifth, to unify the form of statistical tables.

Sixth, provide metadata about the various statistics that were used in the crime paper

Seventh, the Leg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is being transmitted through the KICS the metrics of the original materials necessary for editing 『White paper on crime』 from each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statistics experts need to edit and analyze the transferred raw data.

Eighth, in the setting of the necessary metrics,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s, cleaning and editing of the collected data, design and performance of

analysis, the writing process, victims, experts in the field of the crime, victim, and criminal policy should be allowed to play an important role. And before publishing the 『White Paper on crime』,

And before publication paper crime, the Leg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should be referred to the checking of external experts in order to improve the readability considering the reader's eye level and to ensure the adequacy and accuracy of the contents.

연구총서 14-AB-08

범죄백서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발　　행 | 2014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박상옥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8-89-7366-469-6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